

朝鮮 奴婢制와 美國 黑人奴隸制：比較史的 考察⁽¹⁾

李 榮 薰·梁 東 旼

주로 美國에서 근년에 전개되는 韓國史의 奴婢를 奴隸로, 高麗·朝鮮을 奴隸制社會로 규정하는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 이 글의 의도이다. 조선시대 15-17세기 全盛期의 노비제와 美國南部의 黑人奴隸制를 비교한 결과, 두 예속인의 인구비중이 양쪽 모두 1/3 정도라는 현상적 관찰 위에, 법적으로 주인의 財產이며 매매·상속의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褐人노예와 일부분의 노비가 주인에 의해 使役되고 給養되는 처지에 있었다는 점 등, 진정 奴隸로 이야기될 만한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반면 조선兩班의 노비소유규모가 미국 農場主에 비해 평균적으로 영세하지만,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그 上限을 이야기하기 곤란한 王族·官僚들의 대규모 소유가 존재했다는 점, 대규모 일수록 財產權·法能力·公民權을 보유한 獨立的小經營 노비들이 많아진다는 점 등이 혼동해서는 곤란한 차이점으로 부각되었다. 文化的 제측면에서는 外部의 異域으로부터流入되었다는 起源과 아무래도 지울 수 없는 검은 피부색에 깃든 종교적 세속적 偏見이 아우러져 褐人노예가 끝까지 自由人으로부터 隔離된 상태에 있었다면, 조선 노비의 경우 内부적으로 排出되어 온 그 기원에 대한 集團記憶이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노비가 兩班을 제외한 自由人 일반과 경계를 긋기 곤란한 融合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예속인이 解放되는 과정도 규정하여, 미국에서는 褐人노예에도 순결한 靈魂의 소유자란 도덕적 종교적 革新이 중요하였던 반면, 조선에서는 王權을 제약했던 兩班社會가 쇠약해지는 정치적 力學構圖의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人性論 수준에서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상의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의 종합으로서 이 글은 일반적으로 말하여 朝鮮의 奴婢를 奴隸라 부르기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1. 比較의 背景

패터슨(Orlando Patterson)이 그의 『奴隸制와 社會의 죽음』의 부록에서 망라한 ‘大規模 奴隸制’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나 민족은 東西古今의 世界史에서 대략 백 군데 정도이다[Patterson(1982, pp. 353-364)]. 그 가운데 7-19세기 統一新羅 이래 朝鮮王朝까지의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코리아가 전 백 군데의 奴隸制社會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독특해 보인다. 우선 그 노예제 역사의 길이가 12세기간이나 되어 다른 어느

(1) 본 연구는 1996년도 학술진흥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이다.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은 다른 노예제사회와 거의 무관하게 아시아대륙의 동쪽 끝에서 孤立無援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백 군데의 분포를 대략 보면, 고대 그리스·로마의 地中海地域, 4세기 이래의 아프리카, 그리고 16세기 이래의 新大陸이 3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아시아는 어딘지 금방 알기 힘든 群島를 포함하여 모두 10군데인데, 코리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印度洋圈에 위치해 있다.

地中海와 印度洋, 그리고 大西洋이 역사적으로 奴隸貿易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데이비스(David Brion Davis)가 강조하듯이 世界史에서 노예제와 노예 무역의 역사는 의외로 끈질기게 연속하였다(David(1966, pp. 29-61)). 그리스·로마의 유명한 노예제가 소멸한 이후 노예의 국제간 무역은 아프리카에서 사하라사막이나 인도양을 건너 이슬람 제지역으로 黑人奴隸가 공급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 연장선에서 16세기 이후 서유럽 상인에 의해 대서양을 건너는 노예무역의 역사가 펼쳐졌다. 奴隸制는 古代에서가 아니라 16세기 이후 이를바 資本主義世界體制와 더불어 新大陸에서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패터슨의 백 군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인도제도·미국남부·브라질 등의 신 대륙에 해당하고 있다. 요컨대 세계사에 있어서 노예제의主流가 이같이 흘렀다면, 코리아는 그 주류 밖에서 ‘대규모 노예제’를 성립시킨 거의 유일한 예외가 된다. 그것도 가장 긴 기간에 걸쳐서.

韓國史에 대한 패터슨의 소개가 慎重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특히 12세기간의 긴 역사와 관련해서 그러한데, 가령 7-14세기의 統一新羅·高麗 왕조에서 대규모 노예제가 전개되었다는 그의 판단은 잘못된 번역물이나 그가 만날 수 있었던 미국인 연구자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할 뿐이다. 우리가 보기에 그 기간의 刑罰이나 債務에 기인하며 주로 王室·寺院·貴族에 보유된 노비들은, 그 인구비중이나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주변의 中國·日本과 같은 아시아의 오래된 農業國家의 그것과 그리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노비들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할을 넘기 힘든 비중이었으며, 패터슨의 ‘대규모 노예제’가 통상 요구하는 3할 수준에는 도저히 못 미쳤다(李榮薰(근간)). 그렇지만, 이렇게 부당하게 길게 잡힌 역사를 적절히 잘라내더라도, 만약 朝鮮王朝에 들어와 노비가 인구의 3할까지나 되었음이 사실이라면, 또 그들이 세계사적으로 奴隸로 정의될만한 존재라면, 노예제 역사의主流 밖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규모 노예제사회를 성립시켰다는 한국사의 특수성은 여전히 不變이다.

1980년대 이래 주로 美國에서 새롭게 제기된 이같은 주장이 한국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奴隸制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소나 말과 같은 처지에서 절대적

으로 종속됨을 말하며, 그 지배의 잔인함으로 인해 支配者나 從屬者에게 좀처럼 씻기지 않는 깊은 상처를 안긴다. 인간의 靈魂이 타락하고 비열해짐에 따라 역사는 막다른 골목에서 부패한다. 이같은 毒性의 노예제가 그토록 오래 한 민족의 역사를 지배하였다면, 그 민족의 문화에서 추악함 이외에 다른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본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주장은 이러한 이미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다.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無關心으로 답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곧, 지금까지 그려해왔듯이, 밖의 이야기에 개의치 않는 의젓함이다. 國史編纂委員會가 만든 國史敎科書는 15세기 조선왕조부터를 조선적 형태의 民主主義가 발달하였다는 의미의 ‘近世社會’로 규정하고 있다. 노비가 과연 노예인지, 인구의 몇 할이나 되는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조선왕조를 밖에서는 奴隸制社會로, 안에서는 일종의 近代社會로 규정하는 不相容의 대립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헤게모니와 같은 것이 세계의 歷史學에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존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연구자들에게 미국여행은 聖地巡禮와도 같은 것이어서⁽²⁾ 간간이라도 불쾌한 이야기를 듣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럴 경우 吾不關焉의 의젓함보다 적극적인介入과 討論이 최선의 대응책임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奴婢를 奴隸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규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40년 전에 제출된 金錫亨의 農奴說이〔金錫亨(1993, pp. 71-94)〕 여전히 유력한 代案이다. 오늘날의 자료 및 실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농노설은 허점투성이며, 많은 부분이 선험적인 추론으로 메워져 있다. 그는 부당하게도 노비가 농노인 역사를 紀元 전후의 三國初期까지 끌어 올립으로써 北韓 主體史學의 기초를 놓았다. 南韓에까지 미친 그의 큰 영향력으로 인해 한국사에서 노비인구가 生產者 大衆으로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이 高麗末期 이래라는 사실은, 그 大轉換의 역사적 의의는, 지금까지도 흐릿한 안개 속에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의 농노설의 논리적 근거였던 바, 노비의 중심 부분이 독립적 小經營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은, 시대를 朝鮮王朝로 국한한다면, 그가 보지 못했던 다른 자료에서 운좋게도 실증되고 있다.

美國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선도하고 있는 워싱턴대학의 팔레(James Palais) 교수는 작년 가을 한국에서 행한 일련의 講義에서 주로 김석형과 우리 중 한 사람의 農奴說을 비판하였다. 그가 보기에 한국인들이 자기의 역사를 奴隸制와 封建制(農奴制)를 경과한 서유럽의 역사와 동일시하는 것은 큰 착각인데, 실은 이같은 비판은 매우 傾聽할 만한 것이다. 그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動產’(chattel)으로 잡혀 賣買·相續·贈與의 대상이 된다

(2) 얼마전 金大中 대통령은 美國議會에서의 연설에서 그 곳을 民主主義의 聖所라 칭하였다.

면, 그가 어떠한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든, 독립적 소경영의 주체이든 말든, 奴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팔래 교수는 그러한 노비가 인구의 3할 정도를 차지하는 늦어도 12세기 이래 18세기까지의 한국사를 ‘奴隸制社會’ (slave society)로 규정한다 [Palais(1996, 1997)].

이같은 要旨의 그의 讲義錄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어 주의를 끄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인이 자신의 역사에서 노예제사회가 장기간 존속했다는 사실을 기꺼이 승복해야만 하는 일종의 道德的 義務와 같은 것에 대한 충고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역사는 반드시 진보하지만은 않고 때로는 退步할 수도 있는데 노예제사회가 그러할 수 있는 경우이다. 自由와 機會의 나라 미국에서도 노예제사회가 남부에서 성립한 후퇴랄까 아픔이 있었는데, 양심적인 미국인은 그에 대한 羞恥心을 숨기지 않는다. 노예제의 잔인하고 비열한 역사에 대한 미국인의 수치심은 오늘날 사회의 最貧困層을 형성하고 있는 노예의 후손들에게 정부가 財政支出을 우대하는 도덕적 근거가 되고 있다. 忘却은 죄악이다. 그런데 그가 만난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의 선조가 노비를 보유했던 兩班임을 자부하지만, 자신이 奴婢의 後裔임을 드러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같은 수치심은 커녕 일종의 虛偽意識이 한국 현실에서 어떠한 痘廢를 조장하고 있는지 그로부터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유감이다. 강의록의 말미에서 그는 한국사가 노예제를 장기간 성립시킨 역사적 요인의 하나로 강력한 階層制의 社會秩序와 世襲的 身分制를 창출하는 한국인의 性向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역사의 죄악에 대한 반성의 결여가 奴隸根性의 신분제를 여전히 재생하고 있다는 비판의 謷刺인가.

팔래 교수의 비판은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道德的 價値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당한 주의를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역사 발전의 단위를 즐겨 民族이라는 집단으로 대체해 온 한국의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이 美國史에서 노예제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한 이를테면 個人的 自由나 靈魂의 純潔과도 같은 도덕적 가치가 韓國史에서 어떠한 궤적을 그려왔는지에 대해 관심을 소홀히 한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곤란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곧, 한국사의 노비제는 그에 대한 수치심이 그리 강하지 않았음에도 일찌감치 해체되어 오늘날 그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 비해, 미국사의 노예제는 그에 대한 예민한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흑인노예들은 1861년 修正憲法 14조에 의해 형식적으로 해방되었다지만, 이후 근 백년간이나 差別을 정당화하는 判例들에 의해 劣等人間으로 취급당하였다.

이같은 아이러니는 兩國의 예속적 인간관계가 그支配의 내용에 있어서, 그에 대한 抵

抗의 형태에 있어서, 나아가 그 관계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부정하는 정신세계의 道德體系에 있어서 서로 다른 類型의 것이었음을 충분히 示唆하고 있다. 인간이 타인의 財物이라면 노예라는 팔래 교수의 규정은 매우 간결하며 그런 이유로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人間隸屬에 관한 道德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기치 않게 노예에 대한 그의 법률적 定義가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가를 스스로 분명히 한 셈이다. 가령 解放 이후에도 여전히 흑인을 열등인간으로 차별한 그 도덕체계가 이전의 진정한 노예제사회에서 그들을 財物로 규정한 法制보다 어찌 덜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韓國史의 奴婢制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의 과제는 이제 분명해진 셈이다. 그것은 奴隸와 農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추상적 논의를 넘어 法制 · 經濟 · 社會 · 政治 · 道德의 제측면에 걸친 노비제의 全體像을 다른 제지역의 예속신분제와 비교 검토하는 일이다. 이 일에 있어서 미국사의 노예제가 비교의 대상으로 먼저 잡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討論者들이 미국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노예제는 인류사에서 끈질기게 이어져온 노예제의 마지막 典型에 해당한다. 노예제를 구성하는 文明과 野蠻의 제요소가 미국에서만큼 선명하게 드러난 경우를 찾기 힘들다. 그렇게 보면 한국사의 노비가 과연 노예인가를 둘러싼 논쟁에 있어서 미국사의 흑인노예가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며, 오히려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음이 이상할 정도이다. 각기 韓國史와 美國史에 比較優位를 가진 우리 두 사람이 對話를 나누게 된 배경은 이상과 같다.⁽³⁾

2. 分 布

최초의 센서스가 시행된 1790년 미국남부 諸州에서 흑인노예는 총 65만 여명으로 33.5%의 인구비중이었다. 이후 1860년 南北戰爭 직전에 흑인노예는 총 383만 여명으로 약 6배 늘어난 규모인데, 인구비중은 34%로 변함이 없었다. 州마다 격차가 있어 1860년 당시 南캐롤라이나가 57%로 가장 높은 반면 조그만한 델라웨어에서는 1.5%에 불과하였

(3) 比較에는 일정 수준의 抽象이 요구되기 마련이고, 또 이하 소개하는 양국의 隸屬人에 대한 많은 사실은 거의 양국의 연구자들에겐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史料 내지 研究史의 근거를 밝히지는 않는다. 참고로 우리가 미국남부 奴隸制의 日常生活에 관해 주로 참고한 문헌은 Stampp(1956), Franklin(1967), Genovese(1974), Fogel(1989)임을 밝힌다. 한국사의 奴婢制와 관련해서는 좋은 연구서가 많으나 李榮薰(근간)이 중요한 사실을 거의 綱羅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은 거기서 이 글에서 소개된 사실이나 경우에 따라 특이한 주장의 근거 대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의 주요 문헌에 속하지 않은 사실이나 주장들, 속하더라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한하여 脚註를 붙인다.

다. 평균 이상의 주요 奴隸州는 버지니아(40%), 南캐롤라이나(57%), 北캐롤라이나(33%), 조지아(44%), 미시시피(55%), 앨러버머(45%), 루이지애나(47%) 등이었다. 미시시피, 앨러버머, 루이지애나 등의 新南部(New South)에서 노예제 플란테이션이 발달한 것은 1810년대 이후부터이다. 거기서 발생한 커다란 노예 수요의 일부분은 舊南部(Old South)로부터 공급되었다. 가령 1830-1860년간 버지니아는 약 30만의 노예를 다른 주로 수출하였다. 지역간 이동의 결과 1860년 당시 신남부의 노예가 231만으로 구남부보다 더 많게 되었다.

1860년까지 노예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주로 自然增殖의 덕분이었다. 奴隸船을 타고 아프리카로부터 미국남부로 수송된 인구의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알기 힘드나 대략 40-50만으로 추계된다. 1808년 奴隸貿易이 금지된 이후에도 密貿易이 있었지만, 그 규모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1810-1860년간 노예인구는 110만에서 383만으로 팽창하였다. 그 간에 미국영토로 편입된 지역에 原住한 노예수를 고려해야겠지만, 이같은 팽창은 미국남부에서 노예가 주로 자연증식하였음을 말한다. 미국남부는 기후가 양호하고 카리브제도에서와 같은 격렬한 노동을 강요하는 사탕플란테이션이 없었다는 점에서 노예가 증식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다.

조선시대의 노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이었는지는 미국의 센서스에 비활만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코 정확히 알 수 없다. 최초의 전국적 조사는 1467년의 일인데, 그로부터 두 가지 정보가 전해진다. 첫째는 國家機關 소속의 公奴婢가 45만인데 그 가운데 10만이 도망 중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는 公奴婢와 私奴婢를 합쳐 도망 중인 자가 100만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공노비의 도망률(22.2%)이 사노비에도 적용된다는 가정 위에 도망치지 않은 實存 공·사노비의 수를 추계하면 350만이다. 여기에다 당시의 총인구가 900만쯤이라는 추정을〔權泰煥·慎鏞廈(1977)〕 신뢰하면, 노비의 인구비중은 39%가 된다.

17세기부터 郡縣이나 面 단위의 戶籍이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노비의 인구비중은 1609년 蔚山 47%, 1606년 山陰 42%, 동년 丹城 64%, 1630년 山陰 35%, 1690년 大邱 43%(이상 慶尙道), 1662년 서울北部 75% 등이 알려진 수치이다. 이들 수치는 朝鮮王朝의 인구조사가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에 노비인구의 실제 비중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노비는 그 주인이 자기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비교적 충실히 호적에 등록하였다. 이에 비해 일반 良人은 국가로부터의 役 부담을 피하기 위해 될 수 있는대로 漏落되고자 했다. 가령 1904년 전국 총 591만여에 달하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인구조사는 그 완전률이 35%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연구자들은 17세기 노비인

구의 실제 비중이 서울과 그 이남 지역에서 대략 30% 전후였다는 추정에 익숙해 있다. 平安道·咸鏡道의 북부 지방에서 노비는 훨씬 작았다. 아예 없다는 기록도 있지만, 최근에 발견된 평안도 어느 面의 자료는 농민의 15%가 노비임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에 노비인구의 규모나 비중이 줄었다는 다 잘 아는 사실은 미국과의 비교에서 가장 쉽게 지적할 수 있는 차이점의 하나이다. 大邱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노비인구가 1690년의 43%에서 1789년의 16%로까지 크게 줄었다. 蔚山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보인다. 그런데 19세기가 되면 다시 노비가 증가하는데, 가령 대구의 경우 1858년의 그 비중은 31%나 되었다. 그렇지만 같은 시기 鎮海에서 노비는 2%에 불과하니 대구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곤란하다. 묘하게도 우리는 17세기보다 19세기에 대해 더 모르고 있다. 1910년 당시 전국적으로 조사된 ‘雇農’의 비중은 전 농가의 6%였다〔朝鮮總督府企劃部(1941)〕. 그들의 先祖가 노비였을 가능성성이 크니까 19세기의 노비 비중도 대략 그 정도이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이처럼 그 全盛期 — 미국남부: 1790-1860, 조선: 15-17세기 — 의 인구비중이 비슷하였다면, 개별 主人에 속한 豊人노예와 노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1860년 미국남부의 自由白人 151.6만호 가운데 노예소유자는 38.5만호였다. 앞서 당시의 노예 총수가 383만여라고 하였으니, 호당 평균 10명 정도가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미국남부의 경제가 이러한 작은 규모의 노예소유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이다. 다수의 노예소유자가 영세 규모였지만, 노예의 다수가 영세한 농장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절반을 넘는 수가 20명 이상을 소유한 ‘플랜터’들에게, 1/4 이상이 50명을 넘는 규모의 ‘플랜터귀족’에게 속하였다.

노예소유자가 ‘플랜터’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할 필요가 있었다. 그만한 플랜터는 전 노예소유자 가운데서 12%에 불과하였다. 노예소유자의 88%는 20명 미만을 소유하였고, 72%는 10명 미만이었으며, 약 50%는 5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였다. 전형적인 플랜터들은 20-50명의 노예를 소유하였다. ‘플랜터귀족’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50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1만호 정도였다. 100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한 ‘극단적으로 부유한 가족들’은 3천호가 채 되지 못하였다〔Stampp(1956, pp. 29-31)〕. 어쨌든 노예인구의 다수는 미국남부 棉花王國의 繁榮을 주도한 소수의 플랜터들에게 소유되었다.

이와 비교될 조선의 상황을 우선 17세기 慶尙道 일부 郡縣의 戶籍을 통해서 보자. 1606년 丹城의 경우 兩班 95호가 평균 4.2명의 노비를 소유하였다. 1630년 山陰에서는

95호의 양반이 평균 3.7명을 소유하였다. 여기서는 미국남부에서와 같은 분화 상황이 알려져 있는데, 52호의 다수가 1-2명을, 30호가 3-5명을, 11호가 6-20명을, 2호가 21명 이상을 소유하였다. 1690년 大邱에서는 양반 218호가 평균 5.8구의 노비를 소유하였으며, 1729년 蔚山에서는 165호에 평균 3.4명이었다. 이외 江原道에서 1672년 金化의 상황이 알려져 있는데, 34호의 양반 가운데 26호가 ‘적어도 1명’의 노비를, 대부분의 호가 ‘1-2명에 불과’ 한 노비를 소유하였다(Shin(1974)). 이 곳 강원도에서 노비의 규모가 앞의 경상도에 비해 영세한 것은 兩班 身分의 발달 정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7세기와 18세기초의 농촌사회에서 兩班 奴婢主의 노비 규모는 5명 미만의 영세 규모가 절대 다수였다. 호당 노비규모의 평균은 미국남부에 비해 영세한데, 아마 이 점은 사실 그대로였겠다. 또한 소개된 범위에서는 50명 또는 100명 이상의 노예를 보유한 ‘플랜티귀족’과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첫째, 戶籍은 원칙적으로 주인과 同居하거나 隣接하여 거주하는 노비만을 戶口員로 등록한다는 점이다. 일정 거리 이상이나 遠處에 사는 노비는 그들 스스로 하나의 獨立戶로서 등록되었다. 둘째, 王族이나 官僚 와 같은 대규모 소유자의 존재가 호적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소개된 제지역의 양반도 그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戶籍의 결점은 有力 兩班家에서 전해 오는 相續文書를 통해 잘 보완된다. 유력 양반가가 集居하고 있는 安東·寧海 등의 경북지방에서 전하는 15-16세기 상속문서 36건에서 노비 20명 미만은 3건에 불과하고, 40-100명이 19건, 100-200명이 7건, 200-400명이 6건, 700-800명이 1건이다. 200명 이상을 소유한 7건은 모두 현직 관료이거나 그들의 아들·손자들이었다. 최대 규모는 757명인데 그 소유주는 1494년 弘文館 副提學(정3품)을 지낸 李孟賢이다. 비교적 清職에 있은 中堅 官僚의 규모가 이러하였으니, 王室이나 權貴·大官僚의 노비가 천명을 넘거나 심지어 만 명을 돌파한다는 王朝實錄의 기록이 거짓이 아님을 알겠다.

이러한 대규모는 미국남부에서 찾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이다. 100명 이상의 ‘극단적으로 부유한 가족’이 남부 전역에서 3천호가 채 못된다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250명 이상은 125호에 불과하였다(Fogel(1989, p. 185)). 그러한 매우 특별한 예외가 조선 왕조에서는 下級이라도 實職 관료이면 보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왕조 초기 1414년 太宗은 관료의 노비 규모를 제한할 목적으로 官等에 따라 奴만으로 최저 90명과 최대 150명을 上限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정에 맞지 않아 실패하였다. 그러니까 同數의 婢를 포함한

180-300명는 너무 작은 규모여서 도저히 상한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사회에서 노비 소유는 농촌양반의 5구 미만의 영세한 규모가 광범한 위에, 미국남부에 비해 그 상한을 이야기할 수 없는 王族·官僚의 대규모 소유가 성립한 극히 분산적인 분포를 보였다. 이하 우리가 소개하는 兩國 간의 모든 차이도 이 점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3. 法的 地位와 價格

필래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朝鮮의 奴婢들은 모두 그 주인의 財物이었는데, 美國南部에서도 역시 그러했음은 새삼 지적하기 어색할 정도이다. 미국남부에서 褐人노예의 법적 지위는 ‘人間動產’(human chattel) 그것으로 요약된다. 1852년 앨러버머의 州法은 나란히 쓰여진 두 문장에서 노예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기술하였다. 첫 문장은 노예가 주인이 그의 시간·노동·서비스에 대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진 動產임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 문장은 노예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주인은 자비로써 노예를 대하고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야 하며, 병들거나 늙어도 그를 돌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었다(Stampp(1956, pp. 191-192)). 이런 奴隸法은 남부의 다른 奴隸州에서도, 1852년 이전의 켄터키에서 노예가 不動產이었던 등의 사소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마찬가지였다.

우선 노예는 인간이 아닌 재물이기에 다른 재물을 購入·贈與·相續할 財產權을 갖지 못했다. 商去來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될 수도 없었고, 法庭에서 證言할 능력도 결여하였다. 그들의 結婚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었고, 이에 그들은 그들이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이 주인의 재물인 바는 교환·양도·유증·압류·경매의 대상이었던 점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그들은 주인의 證書없이 함부로 移動할 수 없었으며, 허락없는 集會는 금지되었다. 노예들의 집회는 그 자체로 白人們에게 공포감을 안기었다. 이러한 奴隸法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주인이 사적으로 노예를 解放시키는 일은 18세기만 해도 자유롭게 허용되었다. 부당하게 노예로 잡힌 褐인의 請願도 용인되었다. 그렇지만 19세기에 들어오면 노예의 해방은 점점 어려워졌으며 나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1841년 남캐롤라이나는 遺言에 의한 노예해방을 무효화시켰으며, 1851년 버지니아憲法은 州議會가 어떠한 노예도 해방시키는 것을 금지하였다(Davis(1966, p. 57)).

노예의 人間性을 인정하는 奴隸法의 다른 한편의 취지는 노예의 殺害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植民地期에 있어서 노예의 살해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관대하여 가벼운 罰金刑이

거나 無罪로 판결되었다. 1699년 버지니아議會는 주인이 노예의 벼룩을 가르치다가 극단적인 경우 노예가 죽더라도 殺人罪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故意의인 惡意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毀損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Morgan(1975): 황혜성 외 역(1997, p. 386))는 근거에서였다. 이러한 노예법은 독립 후 노예의 살해를 점점 무겁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798년 조지아의 憲法은 노예의 살해를 백인의 살해와 동일시하였다. 1821년 남캐롤라이나는 노예를 過失致死한 경우라도 6개월간의 囚禁과 500달러의 벌금이라는 重刑에 처했다. 1850년까지 대부분의 남부 奴隸州는 노예에 대한 가혹행위마저 무거운 벌금형으로 다스렸다(Davis(1966, p. 58)). 물론 이러한 인간적인 법률이 노예를 살해한 주인을 실제로 처벌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범죄를 입증해 줄 죽은자의 동료가 대부분 法庭에서의 證言力を 결여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노예의 살해를 금하는 휴머니즘의 발달과 전술한 反人間的 奴隸法의 강화는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법적 휴머니즘 그 자체는 노예의 人權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白人共同體의 道德的 汚染을 막기 위함에 본래의 의도가 있었을 뿐이다.

인간을 재물로 규정한 노예법의 모순이 야기한 수많은 곤란과 분쟁에 대해 미국남부의 議會와 裁判所가 만들어낸 브리태니카와도 같은 방대한 법령집에 비한다면, 조선왕조의 역대 법전을 집대성한 『大典會通』에서 奴婢法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작 20면의 빈약하기 짝이 없는 분량이다. 미국남부의 발달된 所有權이나 法制가 행한 역할을 조선에서는 관습적 權利와 관념적 名分이 대신하였다. 그만큼 조선 노비들의 종속상태는 애매하거나 느슨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노비들이 미국남부의 흑인노예처럼 주인의 재산이었던 그法的地位만큼은 결코 소홀히 취급되지 않았다. 왕조의 법전은 奴婢의 價格과 賣買의 手續을 정하였으며, 또한 相續의 方式을 相續者의 지위에 따른 상이한 分配率까지 자세히 규정하였다. 노비의 재산적 가치를 상속자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던가는 그들이 작성한 15-17세기의 相續文書에 그지없이 잘 나타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상속은 均等分割의 방식에 의했는데, 머리수가 같은 형식적 均分이라기보다 노비의 性別·年齡, 곧 노동능력을 감안한 실질적 균분이었다. 균분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신한 女婢의 胎兒까지 상속물로 지정하여 서로 다른 주인으로 분리시켰는데,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지 않았다.

노비가 주인의 私有物이기 때문에 노비에 대한 苛酷行爲나 殺害가 사실상 처벌되지 않았음은 미국남부와 다르지 않다. 조선의 歷代 王들은 人命의 與奪은 天命을 代理하는 君主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에서 노비의 살해를 자주 금하였지만, 실제적 효력은 거의 없

었다. 최초의 禁令은 1444년 世宗에 의해서인데, 이후 1470년대 『經國大典』이 편찬될 때 누락됨으로써 무효화되었다. 1524년에는 中宗이 같은 금령을 내리나 역시 實效力이 없었다. 1597년 吳希文이란 양반은 婢를 유인하여 함께 도망치다 잡힌 漢卜이란 奴에게 직접 大杖으로 足掌을 70대 치는 벌을 가하였는데, 다음 날 한복이 죽고 말았다. 오희문의 그 날 日記는 “우리 집에 온 지 4년이나 되고 또 원래 죽을 죄도 아니었는데 의외로 죽고 말아 心懷가 매우 편치 않음이 뚜렷을 삼킨 것 같아 밤새도록 잠을 못이루었다”(吳希文(1962, p. 188))고 적고 있다. 노비의 살해에는 이런 정도의 良心의 苛責이 따랐을 뿐이다. 노비의 살해가 실질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18세기 중엽의 英祖代부터이다.

노비는 그의 주인을 告訴할 수 없다는 1422년의 법률은 노비의 法能力을 부정한 가장 중대한 조치였다. 조선 刑律의 기초가 된 중국 大明律은 노비의 주인 고소를 枝1백과 流3천리로 처벌하지만, 조선왕조는 奴-主의 관계가 人倫綱常임을 강조하여 紋刑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의 형률은 노비의 범죄를 대체로 대명률보다 加一等하여 처벌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렇지만 노비의 법능력에 대한 부정이 미국남부에서처럼 포괄적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 가령 흑인노예는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自由白人 일반에 대해서 인간이 아니었다. 자유백인과 관련된 法定에서 흑인의 證言力이 거부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유사하게 조선왕조가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그에 대해 증언할 능력을 노비들로부터 박탈한 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1461년 忠淸道 牙山縣의 官奴 禾萬은 功臣이자 左贊成인 黃守愼이 자기 아버지의 營業田인 官屯田을 불법으로 탈취했다고 司憲府에 고소하였다(『世祖實錄』7年 5月 辛亥). 뒤이은 사헌부의 黃守愼에 대한 彫劾과 朝廷의 大騷亂은 일개 官奴의 법능력을 전제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1599년 경상도 慶州府의 유명한 班村 良洞은 이웃 마을과 水利紛爭에 휘말렸다. 이 때 村民 52명의 署名이 첨부된 訴狀이 守令에 제출되는데, 그 52명 가운데 14명이 양반 노비주이고 38명은 대부분 ‘개똥’과 같은 천한 이름의 노비들이었다(李樹健 編(1981, pp. 581-582)). 노비가 법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公民으로서 역시 王의 百姓이었음을 王에 대한 謀叛件에 관한 한 노비가 그 주인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되거나 증언을 강요당하였던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財產權에 있어서도 조선 노비의 법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하였다. 『經國大典』은 자식이 없이 죽은 奴婢의 財產은 主人에게 歸屬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령은 정당한 相續者가 있는 노비 재산에 대해선 주인의 법적 권리가 없음을 명확히하는 二重의 意義를 지니고 있다. 앞서 소개한 사례, 충청도 牙山의 일개 官奴가 最高位의 관료를 상대로 토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서 전형적으로 보듯이, 노비의 정당한 재산은 법률의 보호 대상이었다. 이러한 類의 判例가 미국남부에서도 없지는 않았다. 1845년 북캐롤라이나의 最高法院은 노예 스스로 재배하도록 農場主가 허락한 棉花가 농장주 死後의 財產目錄에 추가되는 가라는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여 그것이 不可하다고 판결하였다. 당시의 判事 루핀(Ruffin)은 노예가 법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다고 하지만, 生產物에 대한 권리는 慣習과 大衆情緒에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Genovese(1976, p. 539)]. 바로 이대로 흑인노예들의 최소한의 소유 권리는 법제가 아니라 관습과 대중정서에서, 그것도 動產에 한하여, 용인되는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좁은 기초에서 때때로 사업에 성공한 黑人이나 주인보다 부유한 奴隸의 존재가 白人們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러한 존재는 그야말로 예외적이었다. 그에 비한다면 조선 노비들의 財產權은 일총 광범한 범위에서 법적으로 지원되었다.

財產權이 公民權의 기초가 됨은 그에 대한 公的 課稅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토지에 대한 과세는 토지생산물에 대한 田稅와 토지넓이에 비례하는 勞動力의 징발로서 役 두 가지이다. 토지를 소유한 노비는 이 두 가지 稅·役을 부담하였으며, 그러한 이상 公民이었다. 전술하였듯이, 주인과 떨어져 거주하는 노비는 원칙적으로 호적에 獨立戶로 등록되었다. 얼마 이상 떨어져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히 된 적은 없지만, 또 戶의 등록이 괴로운 役의 부담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忌避됨이 일반적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原則과 法制가 부정된 적은 없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奴婢와 일반 良人の 중요한 차이는 노비의 경우 그 몸이 특정 주인에 속하므로 일반 양인의 몸에 부과되는 軍役이 면제된다는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公民이라 하나 반쪽의 불완전한 공민이 조선 노비이다.

이러한 불완전하나마 公民으로 존재한 노비가 전 노비 가운데 어느 정도인가, 토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답할 자료는 없지만, 여러 다양한 記述 자료는 주인의 家內에서 진정 奴隸로 존재한 소수의 노비를 제외한 다수가 크든 작든 자신의 소유지를 가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量案(土地臺帳)과 같은 자료에서 노비가 토지를 소유한 정도는 주인이 노비 이름을 代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1720년 경상도 義城郡 龜山面에 사는 292명의 노비들은 평균 39負의 農地를 소유하였다. 동 면의 양반 147명은 평균 57負2束, 일반 양인 128명은 평균 48부3속이었다[金容燮(1970, p. 141)]. 다만 그 농지의 상대적 규모에서만 작은 農村社會의 정상적 構成員으로서 노비의 존재형태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 노비인구 가운데 상층부에 속하는 사례이겠지만, 이같은 공민적 존재로서 노비가 적지 않았음에 주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奴隸와 奴婢의 價格이 어떠하였는지도 흥미로운 비교거리이다. 미국남부에서 노예의 가격은 1837년에 시작되어 1840년대 중반까지 미친 불황기를 제외한다면 일관되게 상승 추세에 있었으며, 1850년대의 번영기에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가령 1846-1859년간 테네시에서 노예의 평균가격은 413.72달러에서 854.65달러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루이지애나의 한 플랜터는 1820년대에 600달러를 주고 젊은 건장한 노예를 구입하였으나 1850년대 중반에는 1,200-1,500달러나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859년까지는 가격이 더 올라 뉴올리언즈의 노예시장에서 수십명의 노예를 구입한 한 플랜터는 남자노예에 1,600-1,700달러, 여자노예에 1,325-1,400달러나 지불하였다. 熟練技術을 가진 한 대장장이도 구입되었는데 무려 2,500달러나 하였다.

노예가격의 상승은 노예노동의 수익성이 커기 때문이다. 많은 계산에 따르면 1840, 50년대에 성인노예 1명을 위해 주인이 지출하는 食料費·被服費·住居費의 연간 합계는 35달러를 넘지 않았다. 반면 성인노예 1명이 수확하는 적계는 3,500파운드, 많게는 5,000파운드의 면화는 적어도 175 내지 250달러의 純收益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노예노동의 수익성은 노예의 賃貸料에도 반영되었는데, 가령 1859년 미주리의 한 플랜터는 남자노예를 1년간 고용함에 있어서 225달러를 지불하였다. 노예노동의 高收益性은 플란테이션의 勞動體制가 매우 효율적이었을 뿐아니라, 棉花 등의 交易條件이 계속 호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미국남부의 노예제가 잘 통합된 市場經濟의 一環으로 존재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선의 奴婢價格이 어떠한 요인으로 결정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최초의 노비가격은 986년 高麗王朝에 의해 책정되었는데, 15-60세 奴가 (7升)布 100필이었다. 이 가격은 14세기 말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1391년의 어느 기록은 그 수준이 말과의 相對價格에서 1/3-1/2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1398년 朝鮮王朝는 인간이 짐승보다 가벼울 수는 없다는 이유로 15-50세 노비 가격을 布 400필로 대폭 인상하여 말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후 『經國大典』에서 다시 公定된 15-60세 노비가격은 楷貨 4천장인데, 말 1두와 대체로 같은 수준이었으며, 米穀으로는 20석에 해당하였다. 이후 양반가에서 전래되는 노비의 賣買文書를 통해 본 노비가격은 17세기 전반까지 저화 4천장이란 公定價格에는 변함이 없었다. 실제 저화는 통용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저화 단위의 가격이 매매문서에 반드시 표기된 것은 매매에 대한 官의 立案(認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17세기 전반까지 노비의 매매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그런대로 강력하였음을

을 이야기한다. 실제 交易된 米·布·牛·馬로 표기된 去來價格의 수준은 매거래마다 너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나 16세기말까지 그 또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壬辰倭亂을 맞아 乞食하는 인구가 격증하면서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는데,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인구가 감소한 탓인지 다시 오르는 경향을 본다. 그렇지만 1680년대 銅錢이 유통되기 시작한 이후 정부가 다시 정한 노비가격은 100兩으로서 역시 米穀 20석에 해당하였다. 이로 보건대 15-17세기에 있어서 정부의 公定價格과 실제 去來價格 사이에는 큰 괴리가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노비제 전성기의 노비가격은 아직 우리가 그 經濟論理를 잘 알지 못하는 國家에 의해 결정된 非市場價格이었다.

미국남부에서 노예가격이 市場 狀況에 민감히 반응하였음과 대조되는 이같은 조선족의 사정은 조선의 노비가 財物로서 실제 얼마나 빈번히 거래되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알려진 유일한 사례는 경상도 大邱府인데, 1688-1690년 3년간 1,705명의 노비 가운데 14명이 팔려 나갔다.⁽⁴⁾ 노비의 放賣는 이후 18세기에 더 활발하여 1730년을 전후한 3년간에는 2,276명 가운데 51명이, 1786년을 전후한 3년간에는 1,534명 가운데 33명이 팔려 나갔다. 노비는 市場經濟가 일층 발전한 노비제의 解體期에 보다 빈번히 거래되었던 셈인데, 그 실제 의의에 대해선 나중에 쓰겠다. 1690년 당시의 상황으로 부터, 노비의 平均壽命을 35세로 잡고, 노비 총수와 매년의 放賣率이 위와 같은 수준으로 불변이라면, 노비가 그의 평생에 팔려나갈 確率은 9.6%로 계산된다.

반면에 미국남부에서는 어떠하였던가. 거기서의 奴隸競賣市場은, 그와 유사한 시장이 조선에서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예의 거래가 일층 활발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노예 가격이 上昇一路였으므로 노예의 飼育도 수치맞는 사업이었다. 飼育業者の 수와 역할을 과장할 필요야 없지만, 특히 버지니아에서 그들의 존재는 그리 낯설지 않았다. 남부 白人社會의 귀족적 취향 때문에 '진짜 남부신사'인 플랜터들은 그들의 노예를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그리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가 견학한 루이지애나博物館의 奴隸交易 (Slave Trade) 코너의 안내문은 "루이지애나인들은 相續으로 財產을 분할하거나 債債務을 辨濟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그들의 노예를 팔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다. 사실이 그랬다면 방매되는 노예는 주로 가난한 農場主들로부터 나왔겠다. 어쨌든 미국남부에서 흑인노예가 그의 평생에 방매될 확률이 전성기의 조선 노비보다 일층 커짐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傍證을 들 수 있다. 1929년과 1931년에 행해진 元奴隸에 대한 인터뷰 기록에 의하면,

(4) 四方博(1938). 시카다는 放賣率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나, 방매된 노비가 兩班戶 내에 거주하는 私奴婢라는 가정 위에, 그가 제시한 여러 통계로부터 본문의 방매률을 구할 수 있다.

해방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元奴隸 742명 가운데 1/3이 父母의 한쪽이나 양쪽이 缺損된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결손 원인의 60% 정도는 팔려 나갔거나 노예제의 다른 특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Fogel(1989, p. 178)]. 곧 結婚과 出產 이후의 성인노예의 放賣率 이 1/5 ($1/3 * 6/10$)이었으니, 보다 높았을 未婚 노예에 대한 방매율까지 고려하면, 평생에 걸쳐 흑인노예가 팔려 나갈 가능성은 족히 1/3 정도였으리라 짐작된다. 이처럼 미국남부의 노예는 조선의 노비에 비해 방매될 가능성이 3배 이상이었다. 法形式에서 다같은 재물이지만, 미국남부의 노예가 그 속까지 재물이었다면, 조선의 노비에겐 여전히 그 인간임에 상응하는 전술한 사회적 제권리가 수반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노비와 노예가 각기 담당했던 生產樣式의 차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4. 勞動과 報酬

奴隸 5명 미만의 소규모 농장에서 主人이 노예와 함께 노동하는 모습은 미국남부 전역에서 매우 흔하였다. 주인이 들판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면제되기 위해서는 10-30명 정도의 노예가 필요하였다. 이 클래스에 속한 農場主들은 별도의 白人監督者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농장의 경영업무를 수행하였다. 들판 노동의 감독을 위해서는 충직한 노예가 什長으로 선발되었다. 30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한 플랜터들은 대부분 백인 감독자에게 농장경영을 위임하고 자신은 주로 販賣·金融 등에 종사하였다. 플랜터귀족의 경우엔 여러 명의 감독자를 지휘하는 總支配人 격의 인물이 고용되었다.

농장의 모든 노예들이 들판에서 땀을 흘린 것은 아니다. 주인의 邸宅에서 복무하는 요리사·정원사·세탁부·유모·간병인·하인·가정부 등이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농장 내의 공업시설에서 목수·대장장이·벽돌공·제화공·통제조공 등으로 일하였다. 미국남부의 大農場은 다양한 업종이 단일 경영진에 의해 관리되는 複合企業처럼 농장 내부에 여러 수지맞는 공업시설을 설치하는 수가 많았다[梁東然(1987, p. 139)].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흑인들은 棉花·담배·사탕·쌀·麻 등의 재배를 위한 들판 노동에 종사하였다. 플랜터들은 그들의 노예노동을 勞動隊體制(gang system)나 課業體制(task system)로 편성하였다.

노동대체제에서 노예들은 몇 개의 労動隊로 나뉘었으며, 각각 작업을 책임지는 什長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 체제의 기본 목적은 미리 계획된 하루 작업량을 마칠 때까지 隊員 전체를 쉬지 않고 일하도록 강제함에 있었다. 과업체제 하에서 개별 노예는 하루 작업량을 할당받는다. 이 방식은 경지가 排水路網에 의해 小片으로 갈라져 있는 남캐롤라이나의

썰플란테이션에서 효율을 입증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작물의 플랜터들은 이 방식에 그리 만족하지 못하였다. 반복되는 課業이 標準化하기 쉬워 힘센 노예를 약한 노예보다 더 많이 일하게 만들 수 없었고, 또 노예들이 과업을 빨리 끝내려고 부주의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면화 플랜터는 생기질은 노동대체제로 팽이질은 과업체제로 편성 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절히 배합된 형태가 많았지만, 대체로 勞動隊體制가 노예노동의 기본 형태를 이루었다.

미국남부의 노예제 플란테이션이 얼마나 생산적이었던가에 대한 포겔과 엉거만의 計量的 實證(Fogel and Engerman(1977, 1980))은 그에 대한 도덕적 거부감이 여전히 크지만, 아무래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들은 南北戰爭 이전 남부의 總要素生產性이 북부보다 높았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극히 효율적이었던 노예노동의 편성을 들고 있다. 노예들은 機械와도 같은 正確性과 軍隊와도 같은 嚴格性으로 그 작업이 할당되고 상호 조정된 여러 労動隊에서 배속되었다. 노동대 간의 相互依存과 競爭이 강조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대 내에도 효율적인 分業體制가 경쟁적인 課業體制와 더불어 성립해 있었다. 그들이 소개하고 있는, 정확한 速度로 前進하고 있는 노예들의 作業列, 시간 단위로 할당된 課業이나 적절히 통제된 動作들은 오늘날 自動車工場의 組立라인에 서 있는 勞動者들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그들에겐 勤勞契約이나 勞動組合이 없었다.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法的 人格이나 共同體가 결여된 바로 그 이유로 그들은 노예였다.

미국남부의 黑人们이 진정 奴隸답게 노동하였다면, 조선의 奴婢들은 어떠하였나. 이와 관련해서는 노비와 그 주인 간의 수취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노비의 주인에 대한 服務는 크게 役과 貢의 두 가지로 나뉘었다. 役이란 노동력, 곧 직접 부림을 당하는 노비를 말하고, 貢이란 몸값으로 米·布 등 일정 양의 현물을 바치는 노비를 말한다. 이 두 부류의 노비를 연구자들은 立役奴婢와 納貢奴婢로 부른다. 먼저 立役奴婢에 대해. 입역노비의 가장 오래 된 그리고 가장 오래까지 남은 부류가 주인의 家內에 同居하면서 온갖 잡역·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노비들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 고달픔을 흔히 드난 살이라 불렀다. 이들을 家內奴婢라 부르자. 입역노비의 다음 부류는 농업에 그 노동력이 투입되는 노비들이다. 여기서 가장 긴 역사를 갖는 부류는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농업에 使役당하는 노비들이다. 주인의 直營 農業을 조선말로는 家作이라 하였는데, 그래서 이들을 家作奴婢라 부르기로 하자. 예컨대 1639년 서울의 趙氏 兩班家는 麻浦 東幕에 있는 논을 김매는 데 4월 17일-5월 2일의 초벌매기에 14회의 연 66명, 5월 6일-30일의 두벌매기에 22회의 연 160명의 노비를 동원하였다(全鎣大·朴敬伸 譯註(1991, pp. 223-235, 321-

335)). 이들이 바로 가작노비들이다.

家內奴婢와 家作奴婢가 미국남부에서 농장주의 저택에 살면서 온갖 시중을 들거나 들판에서 목화를 딴 대다수의 흑인노예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임은 지적하기 싱거울 정도이다. 가작노비들이 미국에서처럼 효율적인 勞動隊로 편성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노비들 가운데는 보통 首奴 또는 幹奴로 불리는 우두머리가 있었지만, 그들이 미국에서의 什長처럼 때로는 채찍으로 동료의 작업을 감독하지는 않았다. 王辰倭亂 당시 충청도 林川에서 피난살이한 양반 吳希文의 日記는 노비들의怠業에 대한 개탄으로 가득차 있다. 어느 날 그는 김매러 간 노비들을 不時에 방문하여 그들이 나무그늘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런 경우마다 그는 현장에서 노비들의 종아리를 쳤지만 그들의 勞動意慾을 돌구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 미국 플랜터들이 노예들의 태업으로 고민한 흔적은 없다. 그들의 일기에 나타난 일상적인 不安과 苦悶은 농사를 강끄리 망칠 수 있는 자연의 횡포나 시장의 변덕스러움이 주요 원인이었다(Stampp(1956, pp. 408-409)).

이들 兩國의 奴隸들은 노동에 대한 報酬로 주인로부터 生活資料를 지급받았다. 미국남부에서 노예들의 食糧 사정은 비교적 넉넉했던 것 같다. 농장주는 그들의 노예를 먹이는 데는 별로 인색하지 않았다. 주당 약 9리터의 옥수수와 3-4파운드의 돼지고기가 지급됨이 보통이었는데, 가끔 감자·콩·쌀·과일이 보충되었다. 돼지고기는 흑인들이 위낙 좋아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칼로리의 食單이 절반의 비용으로 갖추어 질 수 있었지만, 과잉 지급되는 형편이었다(Fogel(1989, p. 196)). 물론 당시의 농장주들이 현대적인 榮養基準을 알 리야 없었지만, 반면 노예들의 被服이나 住居 사정은 상대적으로 말이 아니었다. 농장주는 노예의 노동과 옷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프런티어 가까운 지역에서는 농장주의 집조차 자랑할만한 것이 못되었지만, 宮殿과 같은 대저택을 가진 플랜터들도 그들의 奴隸宿所에는 그다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 노예의 오막사리에 창문과 침대가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것이 얼마나 비좁은 것인지는 미시시피의 한 플란테이션을 방문한 北部人에 의해 세밀히 묘사되었다. 150명의 노예를 위한 24채의 오막사리는 대체로 가로 14피트와 세로 16피트의 크기로서 약 6평의 넓이였다(Franklin(1967, pp. 140-141)). 비좁은 오막사리는 보통 어린아이와 그를 돌보는 늙은 노예의 차지였고, 건강한 성인노예에겐 住居라기보다 避難處로서 의미가 더 컸다.

조선의 가내·가작노비들이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의식주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잘 알지 못한다. 그들의 일부는 주인과 炊事를 같이 하였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가족과 더불어 주가의 행랑채나 같은 동네에서 별도의 취사단위로 분리되었다. 양

반가의 日記에서 보는 단편적인 정보로는 달마다 일정한 양식이 月料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으며, 정기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被服이나 原料布가 지급되었다. 전술한 吳希文은 궁색한 피난살이 도중에도 “두 婢에게 이 달의 月料를 각 1斗半씩 지급하였다”〔吳希文(1962, p. 420)〕고 어느 날 일기에 적고 있다. 大女의 한 달 양식이 보통 3斗였음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양이었다. 그렇지만 조선의 노비들은 그들의 주인이 健在하는 한 끊어 죽거나 얼어 죽을 염려는 없었다. 今世紀 전반까지 노비제가 농촌사회에서 끈질기게 존속했던 것은 노비제에 깃든 이러한 일종의 社會保障 기능 때문이다. 日帝時代의 이야기이다. 경상도 晉州 지방의 어느 노비 형제가 그들 조상이 양반이란 사실을 알았다. 동생이 “우리 울산 김씨 족보를 가집시다”고 하자, 형은 “나는 횟간이 시려서(배가 고파서) 양반 못하겠다”고 대답하였다〔정진상(1995, p. 339)〕.

이하부터는 美國南部에서 짹을 찾을 수 없는 조선의 노비들이다. 奴婢主의 농사 규모가 家作의 기술적 범위를 넘어서면, 노비들에게 그 耕作을 책임지우는 방식으로 耕地가 할당되었다. 이를 두고 年間課業이라 함은 勞動過程의 시작과 끝이 사실상 노비가족에게 완전히 위임되었기 때문에 形容矛盾이다. 여기서 노비들은 사실상 독립적인 小經營의 主體였다. 그러한 방식의 근년에 알려진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한다. 1554년 서울의 安氏 양반가는 경기도 坡州에 있는 그의 農莊을 경영함에 있어서 농장에 속한 13명의 노비 각각에게 논 10-20두락의 作介와 논 4-9두락과 밭 1-2日耕의 私耕을 할당, 지급하였다. 作介의 생산물은 모두 주인의 몫이며, 반면 私耕은 노비들의 勞役에 대한 보수로 그들의 살림 거리로 지급된 경지이다. 인구에 비해 아직 토지에 여유가 있던 단계에서는 노동의 보수가 이렇게 토지로 지급되었다. 人口壓力이 커진 17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노동의 보수가 現物로 바뀌는데, 그것을 후대에 흔히 ‘새경’이라 부르는 것은 그 기원이 私耕이기 때문이다. 安氏 농장주는 파주의 노비들이 그들의 사경을 함부로 팔지 못하도록 금하였는데, 이는 그 토지가 법률적으로 주인의 것이나 노비들의 慣習的 所有權이 이미 성립해 있는 상태임을 이야기한다. 이같은 作介-私耕 방식은 14세기 후반 서울 近郊에서부터 성립하여 15-16세기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家作과 더불어 農莊의 가장 중요한 경영형태를 이루었다. 이 점은 근년의 韓國經濟史 연구가 거둔 중요한 수확의 하나이다.⁽⁵⁾ 그러한 노비를 作介奴婢라 부르자.

조선의 作介奴婢와 유사하게 미국의 흑인노예들도 주인으로부터 약간의 토지를, 보통 오막사리 주변의 터밭이나 농장 구석의 척박지를 지급받았다. 元奴隸들과의 인터뷰 기록

(5) 作介에 대한 주요 연구로서는 安承俊(1992), 金建泰(1993)를 참조.

은 그들 가족의 60%가 자신의 토지를 할당받았음을 증언하고 있다(Fogel(1989, p. 192)). 노예들은 거기서 진정 자신과 가족을 위해 노동하였다. 채소나 옥수수를 가꾸어 食單을 보충하거나 내다 팔아 담배·설탕·커피의嗜好品을 구입하였다. 닭이나 돼지를 키우는 것도 허용되었다. 우호적인 농장주는 노예들의 생산물을 구입해 주었으며, 대금이 크리스마스선물로 일괄 지불되기도 했다(Genovese(1974, pp. 535-539)). 그렇지만 대부분의 농장주들은 그들의 노예가 ‘프로토小農’(proto-peasant)으로 됨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노예제에 관해서는 미국남부의 선배인 카리브諸島의 농장에서는 노동의 보수로 토지가 자주 지급되었다. 그 결과 가령 18세기 말·19세기 초 쟈마이카에서는 ‘프로토小農’으로 변한 노예들이 쟈마이카 砂糖 輸出의 40%와 通貨量의 20%나 차지할 정도로 강해졌다. 1831년 쟈마이카의 奴隸叛亂은 그러한 경제적 실력에 뒷받침되었다. 그렇지만 미국남부에서 그러한 위험성은 처음부터 봉쇄되었다. 터발의 규모는 결코 크지 않았으며, 거기서의 노동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노예들이 직접 市場에 나갈 수는 없었고, 주인의 마케팅이 그를 대리함이 보통이었다. 판매대금을 주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노예는 자신의 돈을 씀에도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이상, Fogel(1989, pp. 192-194)]. 노예에게 터발이 지급된 것은 어디까지나 노예의 勞動意慾을 고취하거나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의의를 넘지 않았다. 요컨대, 이미 16세기 朝鮮의 作介奴婢들로부터 확인되는 小所有者로의 성향, 그 생산적 토대가 된 프로토小農化, 곧 小經營으로의 自立化 경향을 南北戰爭 직전까지 미국남부의 노예들로부터 찾기란 무리이다.

주인의 농업에 종사한 立役奴婢의 마지막 부류가 并作奴婢이다. 이들은 작개노비가 17세기 후반 이후 사라지자 그를 대신하여 나타났다. 并作이란 일본말 小作의 조선말인데, 생산물을 절반씩 가르는 借地契約을 말한다. 병작의 성립은 15세기부터이지만, 그것이 농촌사회에서 일반화하는 것은 17세기 후반부터이다. 주인과 노비와의 관계도 그러한 시대적 추세를 따라 점차 并作關係로 변하였다. 경상도 漆谷의 李氏 양반가는 1685-1787년간의 秋收記를 남기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처음에는 并作農 가운데 노비가 적다가 점차 확대되고 있었다. 并作은 원래 地主와 농민 간에 성립한 일종의 경제적 계약관계이다. 이러한 관계가 주인과 노비 간에 도입되고 있음은 양자가 점차 경제적 계약관계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并作奴婢는 주로 18세기 이후 奴婢制의 解體期에 해당하는 존재이다. 이런 일종 독립적인 병작노비와 비교될 미국남부의 짹은 南北戰爭 이전에는 없고 解放 이후의 가난한 黑人小農들로부터 찾아질 뿐이다.

이상과 같은 家內·家作·作介·并作의 立役奴婢에 이어 조선 노비의 또 하나의 큰 부

류가 納貢奴婢이다. 이들은 보통 主家와 멀리 떨어져 살면서 주가의 농업과 아무 관련 없이 매년 일정 양의 米·布를 身貢으로 주가에 지불하는 노비들이다. 종전에도 노비들이 신공을 낸다는 사실은 알려져 왔으나, 신공만을 내는 노비가 독자적 부류로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兩班家의 分財記나 收貢記 등의 자료가 많이 공개되기 시작한 얼마 전까지 잘 알지 못했다. 납공노비의 전형적 사례를 앞서 소개한 1494년 弘文館 副提學 李孟賢의 分財記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757명이나 달하는 노비 가운데 148명만이 서울과 그 근교에 살고 나머지 609명은 咸鏡道에서 全羅道에 이르는 69개 郡縣에, 韓半島 전역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였다. 이맹현의 농장은 서울 가까이의 長湍에 소재하였을 뿐이다. 납공 노비는 주로 王族이나 大官僚들이 많이 보유하였다. 16세기 王室의 경제적 기초는 납공노비에 있었다고 지적된다(宋洙煥(1990)).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맞아 노비들이 뿔뿔이 흩어져 수습이 불가능해지자 宮房田이란 왕실 소유의 庄土를 창설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두고, 18세기 인물의 지적이지만, “옛날에는 奴婢를 財產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田土를 재산으로 삼는다”(『均役廳病國論』)고 하였다. 노비가 田土, 곧 농업과 별개로 재산일 수 있었음은 그들이 하등의 경제적 보상없이 그 주인에게 매년 어김없이 상납했던 貢物 때문이다. 그 크기는, 公奴婢의 경우 연간 布 2필로 규정되었는데, 私奴婢도 그에 준함이 관례였다. 그 物目이 반드시 布만은 아니었고, 노비의 처지에 따라 각종 農產物·海產物에 걸쳤다. 그들은 보통 주인과 다른 군현·도에 떨어져 살면서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했던 독립적 소경영의 주체였다. 戶籍에도 독립 主戶로 등록되어 각종 稅役을 부담하였으니, 실은 일반 良人과 구별되기 힘든 존재였다. 한 가지 중요했던 차이는, 전술한대로, 양인에 부과된 軍役이 노비들에겐 면제되었다는 점이다. 良人 1軍丁의 부담은 연간 포 2필이었는데, 노비 신공도 그랬던 것은 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노비의 경우엔 女婢도 收貢의 대상이었으므로 그 몸값의 실질 부담이 양인에 비해 두 배나 무거웠던 무시하기 곤란한 차이가 있었다.

미국남부에서도 조선의 납공노비와 유사한 존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850년 남부 노예인구 311만 가운데 약 60만이 타운이나 도시에서 농업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였다. 도시부르조아의 가정부·요리사로부터 빵집·대장간·구두방·세탁소·이발관·제재소 등의 비숙련 노동자는 상당 부분 흑인노예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공장에서도 노동하였는데, 가령 버지니아 담배공장의 노동자 1만 3천명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었다. 흑인노예가 製造業이 요구하는 熟練勞動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偏見에 불과하다. 노예들은 모든 직종에서 수완을 보였으며, 나아가 중매상업·부동산업·식료잡화상·재봉업·환전업 등등에서 적

지 않게 경영자로서 성공하였다(梁東然(1987, p. 135)). 이 부류 가운데서, 특히 숙련 技能工이나 手工業者 가운데서 일부가 “자신의 시간을 고용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인에게 상납해야 했으며, 그 대가로 어디서 — 물론 너무 멀리 갈 수는 없었지만 — 무슨 일을 하든 간섭당하지 않을 자유를 얻었다. 베지니아의 한 혹인 대장장이는 자신의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원하였다. “제가 이 郡에서 가게를 열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잘 해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나를 고용하여 당신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Stampp(1956, p. 73)]. 逃亡奴隸로서 유명한 回顧錄을 남긴 더글라스(Frederic Douglas)가 이러한 자유를 향유한 적이 있었다. 그는 빌티모아의 한 造船所에 일하면서 매주 3달러를 주인에게 바쳐야 했다. 그것은 ‘힘든 契約’(hard contract)이었지만 더글라스는 그것을 통해 자유로 한 발 다가섬을 느꼈다고 적고 있다(Quarles(ed.)(1960, p. 139)). 그렇지만 그가 애써 모은 財產이 그의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1792년 남캐롤라이나의 셀리(Sally)라는 여자노예는 매년 일정액을 주인에게 지불한다는 약속으로 수년 간 도시에 나가 부지런히 저축하여 드디어 자신의 딸을 해방시킬만한 돈을 모았다. 그렇지만 셀리의 주인은 그녀가 모은 돈도 모두 자기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청원을 듣지 않았다. 당시 남캐롤라이나의 法院은 주인이 부당함을 判決하였다(Davis(1966, p. 269)). 그렇지만 이런 행운을 누린 노예는 남부 전역에서 그야말로 소수였다. 그들은 주로 윗남부(Upper South)의 도시에 몰려 있었을 뿐이고, 그나마 노예가 가게를 운영하고 그들의 商去來 파트너가 됨을 불쾌하게 여기는 白人們의 지속적 위협 하에 있었다.

반면, 조선의 納貢奴婢는 그것을 배제하고선 노비제 全貌의 고찰이 불가능할 정도의 구성적 비중이었다. 호적에서 독립 主戶로 등록된 노비의 노비 전인구에서의 비중은 1609년 蔚山에서 47.8%, 1690년 大邱에서 71.8%의 다수였다. 반면 1606년 丹城에서는 12.6%, 1630년 山陰에서는 29%에 불과하였다. 전라도 海南의 尹氏 兩班家는 1621년 해남 一圓에 284명의 노비를 소유하였는데 그 가운데 179명(63%)이 납공노비였다[『古文書集成 3』(正書本)(1986, pp. 772-779)]. 15-17세기에 걸친 전국적 상황을 이야기할 여건은 못되지만, 지역별 차이가 큰 위에 적어도 1/3 이상이었다고 해도 그리 큰 무리는 아닐 터이다. 잠시 여기까지를 中間決算해 두자. 앞의 두 節에서 우리는, 첫째 노비와 노예의 인구비중이 비슷하지만 美國南部에 비해 그 上限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노비소유가 朝鮮에 있었다는 점, 둘째 주인의 財物이라는 공통의 法制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노비에겐 국가와의 관계에서 불완전하나마 公民權이 附帶해 있었다는 두 가지를 차이를 지적하였

다. 本節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미국남부에서 그 짙을 찾을 수 없는 독립적 소경영의 주체로서 作介·并作의 立役奴婢와 納貢奴婢에, 특히 납공노비에, 기인하는 것임을 지적한 셈이다.

5. “Where were they from?”

우리가 뉴올리안즈 근교의 舊플란테이션에서 노예들의 오막사리를 구경하고 시내로 돌아와 원래 奴隸去來所였던 유서깊은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까지 동행한 뉴욕에서 온 기품있어 보이는 한 白人 婦人은 우리가 조선 노비제와 미국 노예제를 비교하고 있다고 하자 대뜸 다음과 같이 물었다. “Where were they from?” 우리 중의 한 사람은 오랫동안 한국사의 노비제에 대해 연구자로서 관심을 가져왔지만 국내에선 누구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거니와 누구로부터 그에 관해 만족할만한 대답을 들은 적도 없다. 그런 질문을 나라밖에서 처음 듣다니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실은 그런 질문을 하고 안하고 사이에는 노비와 흑인노예에 대해 兩國人이 역사로부터 傳受받고 있는 起源·象徵·宗教·家族·共同體 등의 문화적 제측면에 관한 集團記憶의 구조에 큰 차이가 介在되어 있는 것이다. 본질의 대상은 그러한 문화적 제측면이다.

1619년, 한국사에서 노비제가 그 頂點에 도달해 있을 즈음에, 네델란드상인이 최초로 아프리카 흑인 20명을 버지니아로 데려 왔다. 그들이 그 때부터 奴隸였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피부색만 달랐을 뿐 다른 백인머슴(indenture)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었으며, 머슴계약이 만료되면 자기 농장을 소유한 自由人이 되었다. 奴隸化의 조짐은 벌써 164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도망친 백인머슴과 흑인머슴의 재판 결과는 달랐다. 백인에 대해선 1년의 노동을 추가함에 그쳤지만, 흑인에 대해선 平生勞役의 벌이 부과되었다. 최초의 공식적인 奴隸法은 1661년인데, 그에 의해 흑인머슴들은 계약의 만료 여부와 무관하게 평생노역의 의무를 져야 했다. 이듬 해엔 植民地에 태어난 사람이 自由人인지 奴隸인지는 그의 어머니를 따른다는 신분결정 방식이, 조선말로 從母法이, 채택되었다. 그들이 같은 基督教徒라는 사실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는지, 1667년엔 노예가 洗禮를 받아도 그 신분 상의 변화는 없다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버지니아에서 奴隸制가 제도로서 틀을 갖추는 것은 대체로 1660년대이다.

自由와 機會의 新天地에서 노예제가 성립한 逆說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설명변수는 비옥한 토지가 광대하게 비어있는 반면 노동력은 언제나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초기에는 유

법에서 건너온 가난한 백인들이 주요 동원 대상이었다. 17세기 말까지 담배·쌀·인디고 농장의 주요 노동력은 이들 백인마슬들로 충당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말썽 많은 일꾼이었다. 특하면 계약조건을 들려싸고 주인과 언쟁을 벌렸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자도 드물지 않았다. 黑人奴隸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 오른 것은 17세기 중엽부터였다. 그 이전엔 노예가격이 너무 비싸 백인마슬에 비해 두 배 정도나 되었다. 노예가 도착하여 5년 안에 죽을 확률이 거의 50%였음을 고려하면, 5년짜리 머슴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 이었다. 이런 이유로 1650년까지 버지니아 전체에서 흑인인구는 고작 500명 정도에 불과 했다. 이러한 勞動市場 조건은 17세기 후반 英國에서 하층민을 바깥으로 추방하는 사회적 압력이 줄어들고, 또 신대륙에서 생활·의료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新着民의 殘餘壽命이 연장됨에 따라 흑인노예를 구입함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 전환점은 대략 1660년경으로 지적된다(Morgan(1975): 황혜성 외 역(1997, p. 371)). 노예상인들이 데려온 흑인들이 남자 셋이라면 여자 둘인 性比도, 백인마슬에서는 구하기 힘든, 노예노동의 自然增殖을 보장하는 好條件이었다. 여러모로 흑인의 노예화는 참기 힘든 誘惑이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로부터 輸入 — 엄밀히 말해 掠取 — 되기 시작한 흑인노예가, 전술한대로 자연증식에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1790년까지 남부인구의 1/3 정도로 팽창하였다. 이미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아프리카로부터의 전통과 무관한 아프로-아메리칸(Afro-American) 고유의 문화가 흑인사회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후술하는 몇 가지 이유로, 끝내 그들 祖上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로부터 끌려온 사람들이었다. 비록 內部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追放된 상태, 패터슨의 표현을 빌리자면(Patterson(1982, pp. 45-51)) 生과 死의 중간인 假死의 異域으로부터 流入된 異人,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 그러한 흑인노예의 기원에 대한 백인들의 集團記憶이 우리의 同伴客으로하여금 위와 같이 질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朝鮮 奴婢制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를 삼가자.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최초의 질문은 많은 노비를 소유하게 된 조선시대의 兩班 知識人们로부터였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3천년 전 箕子朝鮮의 8條禁法이 자주 거론되었다. 그 중의 하나인 奴婢法은 聖人 箕子가 완고한 조선인의 薫陶를 위해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이같은 神話를 대신하여 근대의 역사학자들은 三國統一의 전쟁과정에서 발생한 捕虜와 統一新羅 이후의 債務奴隸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 천년 전의 포로와 채무 노예로써 어찌 천년 이후 전인구의 3할을 초과할 정도의 노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는가. 미국남부의 모델을 빌리면, 토지가 인구에 비해 갑자기 넓어지는 어떤 內的 契機가,

가령 다량의 노동력을 수요하는 새로운 農法이 발전하고, 플랜터와 같은 대토지소유자와 농업자가 예속노동력의 需要者로서 농촌사회에 새롭게 定着하고, 또한 그 供給源으로서 아프리카와 같은 예속적 共同體가 내부에서 발견되고, 나아가 예속을 정당화하는 立法과 政策이 성립하는 등의 제조건이 立體的으로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그러한 시기 가 兩班의 농촌 정착이 개시되는 14세기후반부터라는 假說을 가지고 있지만, 고맙게도 우리의 토론자 팔래 교수는 12세기부터라고 비판하고 있다(Palais(1997)). 생산적인 토론은 그 起點을 보다 정확히 밝히겠지만, 어쨌든 단정해도 좋을 것은 미국남부의 노예와 달리 조선의 노비들은 무언가 不透明한 과정의 内部로부터의 排出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남부에서 奴隸制가 성립하게 된 역사적 과정에 관한 앞서의 설명은 노예의 供給源이 바로 가까이의 原住 인디언이 아니라 하필이면 멀리 떨어져 다액의 輸送費를 요한 아프리카인이었던가에 대한 解明이 추가되지 않으면 불완전하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노예제에 따르기 마련인 이른바 象徵의 문제로 접어든다. 新大陸의 인디언들이 아직 定着農耕의 문명을 충분히 성립시키지 못하여 들판의 고된 노동에 적응할 수 없었다는, 그에 비해 아프리카의 문명 수준은 꽤나 높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소수의 식민자들이 원주민을 노예화함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 비용도 상당했을 터이다. 일찍이 1656년 버지니아 議會가 인디언의 노예화를 금했던 직접적 이유도 정치적 군사적이었다. 그렇지만 역시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인디언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아프리카인에게만 타당했던, 도덕적 종교적 偏見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백인 식민자들은 그들의 新大陸을 일종의 清淨地域으로 간주하였으며 거기에 사는 인디언은 아직 그 靈魂이 罪惡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純潔한 인간들이었다. 그러한 인간의 노예화를 용인할 어떠한 도덕적 종교적 명분도 없었다. 반면 아프리카인들은 이미 아프리카 거기서 노예였다.⁽⁶⁾ 그러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프리카인들의 검은 피부색 그것이었다. “결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아프리카인의 特質을 정의한 것은 그들의 皮膚色이었다(Davis(1966, p. 447)).”

오래된 文明圈에서 검정색 그 자체는 어둠·죄악·타락·저주·야비·불운 등 모든 나쁜 것을 상징하였다. 고대인들은 니그로가 노아의 저주받은 자식 햄의 후손이라 믿었다. 바빌로니아의 탈무드에서 니그로는 신의 명령을 어겨 피부가 검어졌다고 되어 있다. 그러

(6) 앞서 1619년 버지니아에 처음 도착한 黑人이 奴隸가 아니라는 말과 직접 충돌하는 표현이나, 어디까지나 백인들의 아프리카인에 대한 무척이나 오래고 깊은 偏見에 대한 비유로 받아들여 졌으면 좋겠다. 인디언 및 아프리카인에 대한 백인들의 관념에 대해선 Davis(1966, ch. 6)을 참조할 수 있다.

한 오랜 偏見과 누적된 咎呪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은 서유럽 상인의 奴隸貿易 이전에 이미 더보델 것 없는 惡性의 汚名을 쓰고 있었다. 노예무역이 활성화되자 세속적인 근대과학은 種의 系統에서 흑인은 침팬지나 오랑우탕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흑인종에겐 문동이병의 因子가 遺傳된다는 등의 가장 지독한 저주를 널리 유포시켰다(Davis(1966, p. 465, 482); Boorstin(1989): 이보형 외 역(1991, pp. 187-193)).

보다 근원적인 名分論은 基督教로부터 제공되었다. 기독교는 노예제를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한 신의 처벌의 일부로, 이 세상의 혼탁한 질서를 바로 잡고 訓育하기 위한 신의 섭리로 간주하였다. 노예들의 유일한 위안은 그들도 저 세상에서 신 앞의 평등한 인간으로 구원되리라는 믿음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現世의 고통은 참을만한 것이었다. 기독교가 바람직하게 권장한 노예제의 윤리는 慈愛로운 주인과 忠直한 하인 그것이었다. 그러한 기독교의 세계에서 아프리카로부터 신대륙으로의 노예무역은 범죄이기는커녕 어둠의 惡靈이 지배하고 있는 罪惡과 疾病의 세계로부터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의로운 전쟁이었다.⁽⁷⁾

奴隸主와 奴隸가 동일한 人種이었던 그리스와 같은 노예제사회에서는 노예에 고유한, 패터슨의 표현에 따르면 그가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자임을 나타내는, 여러 형태의 象徵이 발달하였다. 削髮, 이상한 유니폼, 文身, 烙印 등이 잘 알려진 노예상징이다. 미국남부에서 낙인은 부분적으로 행해지긴 했으나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미 피부색 하나로 상징은 충분하였다. 혼혈 몰라토가 남부인구의 1/10 정도여서 피부색만으로 불충분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런 경우엔 머리카락이 좋은 대안이었다. 삭발을 하였다면 차이는 오히려 불분명해졌을 것이다. 미국남부에서 노예상징이 덜 발달했던 피부색 이외의 원인은 정교한 奴隸法이었다. 1687년 음모에 그치고 말았지만 최초의 奴隸叛亂이 있은 후부터 가혹한 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노예의 살인과 강간은 예외없이 絞刑이었고, 주인에 대한 사소한 욕설마저 심한 채찍과 신체질단으로 보복되었는데 주로 귀가 많이 잘려 나갔다. 夜間步行에는 백인들이 두려움에 놀라지 않도록 등불을 들도록 강요되었다. 그들은 武器를 소지할 수 없었으며, 미시시피에서는 비슷한 이미지의 나팔을 불거나 북을 치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더 이상 수정 보완할 필요가 없는 奴隸法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巡察隊가 조직되었으며, 반란에 관한 소문이라도 들면 부질없이 무고한 흑인에 대한 린치 파티로 해산하기 마련인 임시 警備隊가 조직되었다. 전근대의 노예제사회에서 象徵이 관습적으로 담당했던 많은 기능을 미국인들은 정밀한 노예법과 지배기구로 구체화하였다.

(7) 기독교와 노예제의 관계에 대해선 Davis(1966, ch. 6-7)을 참조.

조선의 경우 屠殺·皮革業이나 柳器業을 맡은 白丁들이 일종의 노예상징에 시달렸다. 백정들은 의복·두발·갓·흔례·장례·가옥재료·주거지 등 생활의 모든 면에서 그들이 異類임을 나타내는 여러 상징으로 차별되었다(김중섭(1994, pp. 50-51)). 그들의 먼 조상은 蒙古와 함께 내려온 鞑靼族이란 신화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적된다(浜中昇(1997)).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집단적으로 격리된 일종의 카스트적 賤民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 人身이 주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소유된 奴婢와 엄연히 달랐다.

조선의 노비들에게 어떤 노예상징이 있었다면 바로 이름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선 노예들에게 자주 알렉산더나 나폴레옹과 같은 偉人的 이름을 붙여 희롱하였지만, 대조적으로 조선의 노비이름은 동물이나 汚物에 빗댄 천한 형태가 많았다. 노비이름에 ‘介’자가 語尾를 이루는 형태도 많은데, 그것은 우리말에서 ‘끌개’처럼 어떤 기능의 道具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풀이된다.⁽⁸⁾ 改名은 여러 노예제사회에서 奴隸化의 중요한 상징이었다. 조선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가령 양반 吳希文은 阿作介라는 婢를 구입한 후 訥隱介로 이름을 바꾸었다(吳希文(1962a, p. 369)). 그녀가 阿作介로 살아온 과거와 그 숱한 사연을 지우는 儀禮이다. 世祖의 登極에 공을 세운 여러 명의 官奴가 있었는데, 신분이 해방되자 姓이 붙은 점잖은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노비들에겐 일반적으로 그들의 血統을 나타내는 姓이 부정되었다.

史料로 남은 歷史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름 정도 이외에 조선의 노비들로부터 그들만의 고유한 상징을 찾기는 어렵다. 高麗時代 만해도 노비들에게 文身을 새기거나 削髮하는 모습이 『高麗史』에서 드물게 관찰되지만, 그러한 행위가 조선시대의 일총 방대한 기록물에서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 고려시대의 많지 않은 노비들은 확실히 奴隸였다. 물론 조선의 노비들이 그 服裝이나 사회적 禮儀에서 그들의 양반 주인과 같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그러한 차별은 兩班과 良人 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이에 노비만에 고유한 차별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나중에 적절한 순서가 되어 좀더 자세히 쓰겠다. 여기서는 저쪽의 基督敎에 대응하는 이쪽의 儒敎에 대해 먼저 고찰한다.

기독교의 奴隸觀에 상응하는 조선 유교의 奴婢觀은 한마디로 ‘奴主之分’이란 말에 잘 요약되어 있다. 奴와 主에는 각기 마땅한 分數가 있다는 뜻이다. 분수는 인간일진대 결코 범할 수 없는 綱常倫理로서 잘 알려진 君臣·父子·夫婦·長幼·朋友의 五倫이 그것이다.

(8) 국어학자 關東大 朴盛鐘 교수의 教示이다.

그런데 조선 유교는 거기에 奴主 관계를 추가하여 실은 六倫을 창출하였으니, 이 점은 유교의 본산인 중국에서 찾을 수 없는 조선 유교의 두드러진 특질의 하나이다. 가령, 조선 유교는 奴主 관계를 君臣 관계와 同格으로 간주하였다. “家主와 奴婢의 제도가 한번 정해 지니 …… 奴가 주인을 섬김이 臣下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 名分이 무너지면 나라가 따라 망할 것이다” 등이 그러한 말이다. 조선왕조는 綱常에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면 죄인을 처형하고 가족을 籍沒하는 이외에, 죄인의 집을 연못으로 파고 郡號의 등급을 내리고 守令을 파직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로 住民의 연대책임을 물었다. 그 3대 범죄가 있었으니 子가 父를, 婦가 夫를, 奴가 主를 살해하는 것이었다. 奴主의 人倫이 父子·夫婦와 동격임을 말한다.

대저 性理學의 세계는 인간을 포함한 森羅萬象이 각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性稟(天命之稟)에 부응하여 그 마땅한 곳에 자리함(各得其所)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조화를 성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같은 自然法的 調和의 세계에서 상하 인간관계는 불변으로 고정되어 있다. 신하가 임금을, 아들이 아비를 범할 수는 결코 없는 법이다. 그런데 이 종속이 唯一神의 기독교 세계에서 익숙한 絶對的 永久的 無限 從屬과 그 취지가 같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각기 그 마땅한 곳에 자리한다”고 하였는데, 가령 신하가 임금에게 忠하면 임금은 신하를 敬하지 않으면 안되는 바, 각기 주어진 分數가 상호 조응하는 상대적 종속이 성리학적 사회질서의 기본 특질이다. 고정적이면서 상대적인 인간관계의 조화, 그것을 主宰하는 非人格的 理法으로서의 天命, 이렇게 성리학 그 자체는 자주 지적되는 그대로 기독교와 달리 두드러지게 실천적인 社會的 倫理이다.

朝鮮 儒教가 독특하게도 노비를 이같은 사회적 윤리의 불가결한 一員으로 설정하였다 면, 그 노비는 人倫을 범하여 皇帝가 대리하는 인간사회 밖으로 추방된, 동아시아에서 노비의 원형을 이루는, 古代 中國의 노비와 그 성격이 다르다. 나아가 우리의 비교 상대인, 原罪로 타락한 인간영혼의 業報로서 주어진, 오로지 절대 唯一神으로의 無限 服屬을 통해 서만 구원될 수 있는, 기독교 세계의 노예와도 상이하다. 조선 노비들은 차라리 현저히 자연법적 조화로 변질된 中世의 기독교 세계에서 契約과 慣習으로 領主에 대한 그의 종속을 상대화하고 定量化한 農奴에 가깝다.

文化를 창조하고 世代간에 전달하는 단위로서 家族과 그 혈연 네트워크로서 親族集團은 양국의 예속인에 대한 비교에서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주요 과제이다. 그에 관한 미국측의 연구는 2차대전 이전만해도 惡性의 루머에 가까운 것이었다. 흑인은 無節制하고 강한 淫慾으로 특징지워진 인종이었다. 흑인 출신의 연구자도 참가한 1970년초까지의 일총 아

카데믹한 연구의 결과도 비슷하였다. 家族이라 해도 父系의 單婚家族은 드물고 母系의 擴大家族인 경우가 많고, 性모랄이 결여된 가운데 가족은 쉽게 해체되었다. 일반적으로 플란테이션에서 흑인의 家族生活은 없는 편이었다.⁽⁹⁾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여러 플란테이션의 기록을 정밀 검토한 거트만(Herbert G. Gutman)과 제노비스(Eugene D. Genovese)에 의해 인식의 중대 전환이 이루어졌다[Gutman(1975, 1976), Genovese(1974)]. 90% 이상의 흑인노예들은 보통 4-5명의, 경우에 따라선 10명도 넘는, 일반적으로 父系인, 直系家族을 형성하였다. 가족결합은 발달된 家族倫理와 더불어 안정적으로 장기지속하였다. 農場主에 의한 인위적인 解體는 커다란 저항을 유발하였으며, 그리 잣은 일도 아니었다. 處女들의 婚前性交는 꽤나 광범하였으며 또 관대히 용인되었는데, 편견없이 보면 그것은 좋은 배우자를 맞이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과정이었다. 반면 결혼 후에는 부부 간에 엄격한 貞操가 요구되었다. 결혼은 보통 族外婚이었으며, 그렇게 확대되는 親族集團은 강한 血統意識으로 연결되었다. 거트만은 그가 관찰한 흑인노예의 가족과 친족집단이 토니(R.H. Tawney)가 묘사한 16세기 英國의 民衆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Gutman (1976, pp. 36-37)].

거트만과 제노비스가 몇 가지 점에서 誇張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들의 관찰대상은 주로 대규모의 부유하고 안정적인 플란테이션이었다. 소규모의 가난한 그리고 자주 분할된 농장에서 노예들의 가족결합은 일종 不安定하였다. 브레싱게임(John W. Blassingame)은 奴隸夫婦가 결혼생활 6년 이전에 주인에 의해 강제로 분리된 경우를 30% 이상으로 보았다[Blassingame(1972, p. 91)]. 그의 추정은, 앞서 소개하였듯이, 元奴隸들에 대한 인터뷰 기록으로 지지된다. 보통 奴隸宿所(slave quarters)로 불린 노예들의 村落이 강한 自治性을 지닌 共同體였다는 주장도 소규모 농장에서는 곤란한 과장이다. 포겔은 공동체적 자치질서를 요구하는 인간집단의 규모가 적어도 50명이라 할 때, 남부 흑인노예의 20%만이 그에 속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Fogel(1989, p. 186)]. 여기서는 농장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진 위에, 奴隸制로부터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깊숙한 것이어서 노예들의 家族·親族·村落의 安定性과 自律性에 대한 평가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포겔의 保守的인 리뷰를 우리의 입장으로 대신한다.

朝鮮의 奴婢가 가족으로 결합된 정도와 양상에 대해선 경상도 兩班家의 15-16세기 分財記 36건 상의 노비 3,3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다. 그 가운데 29%가 부모없는 未婚의 兄弟만이거나 하등의 피붙이 없이 혼자만인 주로 未成年의 노비들이다[李

(9) 흑인노예의 家族·親族에 관한 研究史의 간결한 리뷰로서는 Fogel (1989, ch. 6)이 유익하다.

榮薰(1987)]. 그러니까 노비의 가족 형성률은 나머지 71%였던 셈인데, 거트만이 조사한 흑인노예에 비해 낮은 편이다. 노비소유의 규모에 따라 가족 형성에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남은 예상한 그대로이다. 주로 立役奴婢가 중심을 이루는 농촌 양반의 소규모 노비에서는 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노비가 상대적으로 많고, 가족이라 해도 夫婦와 子女로 이루어진 평균 4명의 小家族이 지배적이다. 반면, 주로 納貢奴婢로 이루어진 大官僚의 대규모 노비에서는 대부분의 노비가 가족구성에 속하며, 그것도 孫子까지 3대로 이루어진 평균 7명의 複合家族인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다.

노비가족이 주인의 인위적인 解體에 대해 어느 정도의 抵抗力を 지녔는지는 논쟁거리이다. 여러 지방의 양반가의 분재기는 노비가족이 상속과정에서 여러 相續者들에게 분할됨이 거의 원칙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두고 노비가족이 실제로 해체되었다고 보는 것은 속단이다. 드난살이의 家內奴婢나 인접한 立役奴婢일 경우엔 그러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원처 納貢奴婢의 경우엔 문서상의 분할에 불과하고, 실제로 収貢 대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奴婢主 친족집단의 共同支配를 의미하는 수가 많았다. 그렇지만 납공노비라도 주인의 捉致 의지가 執拗한 것이라면 끝까지 온전할 수는 없었다. 張弼基가 제시한 17세기 말 충청도 恩津의 徐氏 양반가의 사례에 의하면, 20명 정도의 노비가 주인집 안팎에 배치되었는데, 缺員이 생기면 他處의 노비가족으로부터 보충되었다[張弼基(1993)]. 이들의 수가 번식하면 일부 노비가족은 주인의 배려로 타처로 내보내져 納貢奴婢가 되었다. 이렇게 主家를 중심으로 한 노비인구의 對流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다른 道나 郡縣에 사는 노비들까지 거기에 말리지는 않았음이 보통이다. 정리하면, 노비가족의 결합력은 주가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있었는데, 대체로 그것이 家內 → 家作 → 作介 → 并作 → 納貢으로 갈수록 主家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가족과 친족의 결합력도 강고해지는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家族生活의 내면으로 들어가 가족·친족의 형성원리나 性모랄 등의 규범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선 자료나 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소개하기 곤란하다. 흑인노예의 약 10% 전후가 글을 쓰고 읽을 능력이 있어 애굽은 사연의 많은 편지를 남겼지만, 우리의 노비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18세기 전반 전라도 筆岩書院이 작성한 奴婢族譜는 노비의 친족집단이 母系原理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다수임을 보이고 있다[安承俊(1993)]. 노비 이름에서 형제간의 돌림자는 간혹 확인되나, 거트만이 흑인노예의 친족집단에서 발견한 先祖의 이름자를 계승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양반 奴婢主들이 남긴 기록이 어느 정도나 충실히 노비들의 日常生活을 대변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의문이다.

그런데 家族과 共同體라는 문화적 영역에서 우리는 양국의 예속인이 서로 상이한 역사적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와 분리된 단순 비교가 거의 무의미함을 느낀다. 우리가 보기에도 미국의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흑인노예와 백인주인과의 관계 또는 플란테이션 내의 노예숙소로 범위를 한정함은 초점이 빗나간 것 같다. 만약 플란테이션이 적대적인 자유백인에 의해 포위되고 감시된 捕虜收容所와 같은 것이었다면, 그 안에서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백인 노예주의支配費用을 덜어주는 이상의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진정한 의미의 自律性은 그들의 가족과 촌락이 그들의 이웃한 白人住民 일반과의 日常에서 나아가 公權力과의 관계에서 비록 예속적이나마 사회생활의 기초적 단위로서 실질적으로 또 법제적으로 공인되는 상대적 관계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이 점에서 흑인노예의 처지는 점점 絶望의이었다.

조선의 노비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여타의 자유인들로부터 어떻게 차별되고 격리되었는가라는 의문에 관해 朝鮮王朝의 法典이 제공하는 답변은 그들이 주인과 주인이 속한 양반신분으로부터는 심하게 차별되었지만, 여타의 자유인과는 법적으로 同格이었다는 금방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다. 1428년 世宗이 내린 服制에 관한 금령은 ‘庶民과 工商賤隸’가 8升布 이상의 고급직물과 담비가죽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없고 가죽신도 신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庶民, 곧 일반 良人과 賤隸, 곧 노비는 국가 禮制에서 동격이었다. 조선의 士大夫들은 자주 “禮는 庶民에 미치지 않는다”(禮不及庶)고 하였는데, 양반 이하의 양인·노비는 유교적 禮制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1554년의 한 법령은 ‘庶人과 賤口’가 士族을 구타하였을 경우 온 가족을 복방 변경으로 옮긴다 하였다. 이처럼 刑律에서도 양인과 노비는 동격이었다.

良人과 奴婢의 結婚이 금지되지 않았음을 다른 무엇보다 노비가 그의 일상에서 다수의 자유인들로부터 격리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가장 훌륭한 지표이다. 발달된 노예제사회에서 자유인과 노예의 性的結合은 터부였다. 로마에서 노예는 주인과 함께 마시고 떠들 수 있었으나 性交만은 死刑으로 처벌되었다. 우리의 미국남부에서도 白人과 黑人奴隸의 결혼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 古代 中國에서도 우리나라 高麗에서도 良賤交婚은 금지되었다. 그러한 정책이 朝鮮王朝에 들어와서는 포기되었다. 양천교혼이 얼마나 왕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다. 15-16세기 양반가의 분재기에서는 노비의 거의 절반이, 1609년 蔚山의 戶籍에서는 奴의 74%가 그의 배우자를 양인신분으로부터 맞고 있었다[韓榮國(1977, 1978)]. 노비가 양인과 결혼하여 낳은 所生은 모두 노비가 된다. 양반 노비주는 그러한 결혼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좋은 방책이므로 적극 권장하였다. 이 가장 비정

한 身分世襲의 방식은 조선 노비제에 깃든 고약한 노예제의 因子로 자주 거론되지만,(10)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형식적인 법제적 관찰로는 좀처럼 看取되지 않는 自由와 隸從이 적절히 몸을 섞은 생산자 대중의 共同體가 성립하고 있음에, 진정 반노예제적 에토스가 형성되고 있었던 무대 뒷편의 사정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우리는 왜 한국인이 우리의 同伴客처럼 대뜸 조선 노비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묻지 않는지 대답할 수 있다. 흑인노예가 假死의 異域에서 끌려온 자라는 결코 지울 수 없는 백인들의 생생한 집단기억에 비하자면, 노비가 역사의 어느 단계에서 슬그머니 생산자 대중의 일부로 생겨난 과정은 아직도 불투명하기 짹이 없다. 노비는 奴隸답게 사회로부터 차별되거나 격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의 고귀하신 양반 나으리께서 생산자 대중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여 支配共同體를 형성하였음이 朝鮮社會의 진솔한 실정이다. 노비, 양인, 양반을 둘러싼 이상의 국가적 공동체적 질서는 양반과 그의 후예가 노비에 대한 그들의 지배 행위에 대해 羞恥心을 느끼지 않은 이유의 근원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마지막 節로 들어 간다.

6. 解 放

노예제의 毒性에 마비되어 미국남부의 경제가 빈곤하고 정체적이었다는 주장은 북부에 의해 조장된 黑色宣傳에 가깝다. 棉花에 대한 세계 수요의 증대로 미국남부의 면화 증산률은 1806-1860년간 호황기일 경우 연평균 18.2%나 되었다. 1840-1860년간 남부는 연평균 1.7%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그 때까지의 資本主義 經濟史의 표준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었다. 1860년 미국남부를 하나의 독립국가로 간주한다면, 그 일인당 소득수준은 세계 4위였다. 잘 통합된 市場經濟 덕분에 남부의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었으며, 유감스럽게도 북부에 비해 工業化가 뒤떨어진 것은 노예제 플란테이션의 경쟁력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이상 梁東煥(1987)].

이 繁榮一路의棉花王國이 스스로의 모순으로 붕괴되리라는 徵候는 없었다. 1830년대에 찰스頓의 시민들은 그들이 이미 하나의 완벽한 理想社會를 건설하였다고 믿었다.(11) 그 이상사회가 자신들에겐 영원한 耻辱과 屈從을 의미할 뿐임을 인구 1/3의 흑인노예들이 몰랐던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치밀한 지배기구에 뒷받침되더라도 노예제는

(10) 패터슨은 父母 어느 한쪽이면 그 子息이 노예가 되는 가장 惡性的인 身分世襲方式(deterior condicio)의 가장 홀륭한 사례로서 코리아를 들고 있다[Patterson(1982, p. 143)].

(11) 우리들이 찰스頓博物館의 小冊子에서 읽은 글인데, 유감스럽게도 書名을 기억할 수 없다.

그에 고유한 격렬한 抵抗을 그 본연의 요소로 내포한다. 소극적인 저항은 적지 않은 自殺이었다. 자신의 슬픈 운명을 더 이상 물리지 않기 위해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비정한 어머니도 있었다. 가장 일상적인 저항은 결코 끊어진 적이 없는 逃亡의 흐름이었다. 도망노예들이 숲속이나 늦지대에서 그들만의 자유공동체를 결성한 사례도 있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인을 공격한 노예들도 있었다. 프랭크린은 남부의 新聞을 유심히 읽으면 숲이나 들판에서 노예에게 살해된 주인에 관한記事가 ‘굉장히’(exceedingly)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Franklin(1967, p. 152)). 노예 출신의 비상한 靈魂의 소유자들이 조직한 집단적蜂起는 1831년 버지니아의 사우샘턴에서 일어난 내트 터너(Nat Turner)의 반란을 제외하곤 거의 사전에 발각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1865년까지 謀議는 끊이지 않았으며, 그에 관한 은밀한 소문은 백인사회에 잠재된 공포였다. 그렇지만 지배자들은 너무나 잘 단결되어 있었으며, 노예들은 더 이상 보탤 것 없는 완벽한 지배체제에 埋沒되어 있었다. 만약 북부나 서유럽으로부터의 도덕적 및 정치적 포위가 없었더라면, 면화왕국은 보다 오랜 번영을 누렸음이 분명하다. 노예들이 바깥에서 流入되었듯이 면화왕국은 바깥으로부터의 攻擊으로 해체되었다.

대조적으로 조선왕조의 奴婢制는 내재적 모순의 장기누적에 따른 완만한 해체 과정을 밟았다. 노비제의 存廢를 둘러싸고, 미국의 남북전쟁에 비견할 필요야 없지만, 격렬한 정치적 충돌은 없었다. 民衆史觀의 지지자들에겐 실망스럽겠지만, 노비들의 영웅적인 階級鬪爭도 없었다. 高麗王朝만 하더라도, 잘 알려진 萬積의 亂처럼, 몇 차례 서울과 지방에서 조직된 노비들의蜂起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조선왕조에 들어와 그러한 집단적봉기가 발각되거나 탄압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 노비들의 저항 방식은 기본적으로 逃亡이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노비의 도망률은 1484년 당시 전국적으로 22%였다. 1528년 경상도 安東府의 李氏 양반가의 경우 51명의 노비 가운데 1/3인 17명이 도망 중이었다. 상당한 노비가 도망을 통해 자신을 해방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노비가 줄지 않았던 것은 도망친만큼이나 새로운 노비가 주로 良賤交婚의 방식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循環의 고리가 끊어지고 노비제가 解體期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최초의 본격적인 징후는 1690년을 전후해서 발견된다. 아직 잘 모르는 어떤 단기 요인에 의해 노비의 상대 가격이 米 20석에서 2-3석으로까지 폭락한 다음 18세기 내내 회복되지 못하였다. 노비매매는 家事勞動으로서의 가치가 여전한 婢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奴의 매매는 점점 드물어져 갔다. 노비인구도 1690년경부터 줄고 있었는데 특히 1730년경 이후부터 급격하였다. 노비인구의 감소는 主家와 멀리 떨어진 納貢奴婢가 먼저 소멸하는 순서였다. 이와

더불어 호적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는 노비의 가족규모가 점점 영세해진다는 사실이다. 일찍이 1930년대말에 이 현상을 확인한 시카다(四方博)는 노비가 점차 雇傭人化한다고 하였는데([四方博(1938, p. 413)]), 올바른 지적이다. 19세기에 들어오면 奴婢賣買라 하더라도 몸을 파는 자가 자기 當代에 한하는 예속임을 전제한 장기 고용계약인 경우가 많아진다. 이렇게 고용인화한 주로 婦로 구성된 인구비중 6% (전술) 정도가 19세기의 노비제였다. 全盛期의 노비제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런 이유로 韓國史에서 노비제는 사실상 19세기 초반에 끝났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그 제도의 終熄을 알리는 마침표는 1894년 甲午改革을 기다려서야 가능하였다. 제도의 頑固함을 말하는 것일까. 그도 그러하였지만, 제도의 소멸 그 자체가 순 내적 요인의 장기누적이었다는 앞서의 지적을 상기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兩國에서 예속인을 해방시킨 힘이 안팎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형식적인 기원의 문제보다 그 힘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말해 解放戰線의 主力이 어떤 경제적 利害, 도덕적 教義, 정치적 名分으로 무장했던가의 문제를 살피어 일종 흥미로운 비교거리이다. 미국남부에 대한 포위망이 경제적으로 매우 엉성한 것이었음은 전술한 그대로이다. 정치적으로 反奴隸制의 統一戰線이 북부에서 형성되는 것은 매우 늦게도 1850년대였다. 흑인노예들의 혼신적인 獨立戰爭에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독립 후의 미국헌법은 奴隸主의 私有財產을 옹호함으로써 노예제를 사실상 공인하였다. 이러한 憲法이 건재하는 한, 반노예제 전선은 정치적으로 춰약할 수밖에 없었다. 소수의 귀족적 名門에 의해 주도된 英國의 정치와 달리, 미국의 정치가들은 有權者들의 성향에 민감히 규정되는 人民主義的 특질을 지녔다. 이에다 남부의 경제적 번영에 지지되어 1850년까지 議會에서의 헤게모니는 남부 정치가들이 쥐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뒤늦게나마 共和黨 내에서 새로운 반노예제 연합이 결성되는 것은 1854-1856년이며, 이들이 의회에서 강력한 정치적 블록을 형성하는 것은 1856-1858년이었다. 링컨의 대통령 당선으로 行政府가 장악되는 것은 1860년이다[이상 Fogel(1989, ch. 9)].

정치적으로 이렇게 뒤졌던 반면, 미국에서의 반노예제 전선은 처음부터 道德的 내지 宗教的이었다. 식민지 초기 아래 오랜 기간에 걸쳐 黑人도 순수한 靈魂의 인간이라는 教理가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1850년대의 갑작스런 정치적 연합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최초의 중요한 종교적 전환은 퀘이커들에 의해서였다. 칼빈 등의 宗教改革가들조차 인간 본성에 죄악의 뿌리가 깊히 박혀 있으며, 그러한 罪性은 결코 역사에 의해 淨化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罪惡觀은 쉽게 노예제를 긍정하였다. 퀴커들은 그러한

고정적인 神學과 二元的인 역사관을 부정하였다. 인간 본성의 原罪는 극복될 수 있으며, 千年王國은 가까운 장래의 現世에서 구현될 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신과 함께 살아갈 자신의 모습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에 완벽히 純潔한 靈魂의 소지자로 되기 위한 인간 의지와 무조건적 사랑의 실천에 절대적 신뢰를 표하였다. 이러한 퀘이커들의 정신자세에서 기존의 모든 사회질서의 타락은 奴隸制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한 반노예제 성향은 자연스레 노예도 천년왕국에 함께 참여할 순수한 영혼으로 간주하였다.⁽¹²⁾

1730년대 이래의 信仰復興運動도 퀘이커에 이어 반노예제 전선의 중요한 傳道師였다. 그들은 죄악을 형이상학적인 天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모든 利己主義가 죄악의 근원이었으며, 반면 완전한 사랑을 통해 인간은 신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¹³⁾ 신 앞에서, 신과 더불어, 靈魂의 純粹 可能性을 믿었던 이들 새로운 신학이 처음부터 행동강령으로 노예제의 폐지를 내걸었던 것은 아니다. 감리교가 노예제가 神의 黃金律에 위반됨을 공식 선언하는 것은 1784년의 일이다. 많은 戰士들이 그 간에 양성되었다. 영국인 뉴튼(John Newton)은 노예무역에 종사한 船員이었다. 그는 奴隸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죄악으로 느끼지 않았다. 어느날 거센 暴風雨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는, 그리곤 심한 热病으로 지칠대로 지친 그는, 유명한 福音主義者의 說教를 듣고서 드디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침잠한 羞恥心에 눈을 뜬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沈默은 罪惡이었다.⁽¹⁴⁾

퀘이커와 감리교의 聖徒들이, 또한 그들에 의해 1790년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춘 노예제의 해방된 後裔들이, 함께 참여한 半奴隸制 戰線이 1860년까지 거둔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더 이상 자세히 소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미국남부를 여타의 文明世界로부터 고립시키고 끝내 그 노예제를 봉괴시킨 힘의 본질이 道德的이며 宗教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재확인으로 충분하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의 토론자 팔레 교수가 강조하는 노예제에 대한 羞恥心도 그렇게 특별히 基督教의였던 정신세계의 산물이며, 그것도 기독교 발전의 특정한 단계에서 형성된 역사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조적으로 朝鮮의 奴婢制를 해체시킨 힘은 道德的이라기보다 두드러지게 政治의였다. 그에 앞서 노비제의 자생적 점진적 해체를 이끈 보다 근원적인 經濟的 요인에 대해 간단히 살펴 둔다. 1690년을 전후하여 노비가격을 대폭 하락시킨 장기적 요인으로 가장

(12) 퀘이커들의 반노예제적 教理에 대해선 Davis(1966, ch. 10)이 자세하다.

(13) 복음주의적 信仰復興運動의 반노예제 윤리에 대해선 Davis(1966, ch. 12)를 참조.

(14) 뉴튼의 이야기는 Davis(1966, pp. 389-390)에다 우리들이 약간 潤色을 가한 것이다.

중요했던 것은 역시 17세기의 인구증가이다. 가령 1634-1720년간 경상도 大邱府 租岩坊의 量案에서 토지소유자의 수는 338명에서 무려 833명으로 2.5배나 증가하였다. 도시 近郊과 특별히 높았던 사례지만, 일반 농촌에서도 가령 尚州牧 丹東面의 경우 동기간 토지 소유자는 467명에서 681명으로 1.5배 증가하였다[李榮薰(1997, pp. 80-81)]. 인간이 혼해지고 토지가 귀해진 要素賦存度의 변화가 農奴制의 해체를 가져온 經濟史에서 잘 알려진 일이다. 노비의 공급과잉을 조장한 또 하나의 원인은 移秧法과 같은 小農的 集約農法의 발전이다. 소규모 토지에 다량의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투하함으로써 高生產性을 실현하는 이 새로운 농법에서 懈業을 本態로 하는 노비노동은 적합하지 않았다. 양반 지주들은 家作이나 作介를 위해 노비를 힘들여 부리기보다 차라리 주변의 가난한 그렁지만 부지런한 小農들에게 幷作을 대여함이 일종 수지맞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노비노동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였다. 결국 奴婢制의 자생적 해체에 담긴 경제사적 의의는 自立的 小農 및 그에 바탕한 小農社會의 성숙 그것이다.

이러한 경제사적 과정에 박차를 가한 최초의 정치적 충격은 1669년(顯宗 10)의 일이다. 당시 支配政派인 西人의 領袖이자 朝鮮性理學의 泰斗인 宋時烈에 의해 奴가 양인 여자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의 신분을 良人으로 삼는다는 이른바 從母從良法이 건의되어 채택되었다. 이는 종래의 신분세습 방식에 비해 노비인구를 줄이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이 법은 이후에 몇 차례 폐지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드디어 英祖 6년, 1730년에 이르러 항구적인 立法으로 정착되었다.⁽¹⁵⁾ 여러 지방의 호적에서 확인되는 바, 특히 1730년대 이래 노비인구의 감소가 격심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당초 宋時烈의 주장은 人本主義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良人을 다수 확보하여 北伐의 財源을 마련한다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실은 그보다 3년 전인 1666년부터 그러한 정책이 추구되었으니, 대대적인 戶口調查가 그것이다. 양반가의 올타리 안팎에 놓인 노비의 집들을 獨立戶로 파악하겠다는 것이 조사의 기본 취지였다. 이에 비협조적이거나 저항하는 양반가에 대해선 일찍이 없던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다. 그 결과 전국 戶總이 1663년에 81만이었던 것이 1666년에 111만, 나아가 1669년에 131만으로 급증하였다. 새로 조사된 노비들에겐 이전까지 그리 부과되지 않았던 軍役이 부과되었다. 가령 1690년 大邱府 10개 面의 노비호총 1,172호 가운데 63%가 각종 군역을 부과받고 있었다. 노비들은 이제 명실공히 公民이었다.

기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反奴婢制 政策이 전개됨과 때를 같이 하여 노비제 비

(15) 이에 대해선 全炯澤(1989)이 좋은 참고서이다.

판의 이데올로기도 널리 流布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본격적인 비판은 1660년대에 『磻溪隱錄』을 저술한 柳馨遠부터였으리라. 비판의 취지는 노비신분의 영구 세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일종의 同情論이었다. 이후 많은 학자와 관료에 의해 노비제의 명분론적 및 역사적 근거 그 자체가 부정되기 시작하였다. 노비도 君王의百姓이라는 주장이 비판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다. 역사적 근거에 대한 비판은 聖人 箕子가 중국에서 노비제를 도입하였다는 기준의 定說이 실은 오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제논리는 이후 1801년 純祖가 6만 6천여 公奴婢를 해방하면서 반포한 綸音에 잘 집약되어 있다. 윤음은 먼저 箕子起源說을 부정한다. 箕子가 도입한 것은 노비법이 포함된 8條禁法이 아니라 실은 書經에서 王政의 기본 임무로 규정된 洪範八政임이 응변으로 논증되고 있다. 이어 純祖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황차 王者가 그 백성에 임함에 있어서 貴賤이 없고 內外가 없이 모두가 나의 발가벗은 아기(赤子)인데, 奴라하고 婢라하여 구별하고 나눔이 어찌 同胞를 똑같이 사랑하는 義理라 하겠는가”[『增補文獻備考』中(影印本), p. 911].

프랑스革命보다 불과 10년이 뒤진 이 朝鮮版 人權宣言에서 해방과 평등의 원리는 王政의 大義로부터 구해지고 있다. 왕정의 대의는 무슨 근거로 백성의 평등함을 선언하는가. 그것은 王政이 代理하는 天命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天命論과 그 세속적 轉形인 王政論이 조선 노비제를 해체시킨 기본 동력이었다. 앞서 설명한대로 朝鮮性理學은 天命이 인간마다 상이하게 부여한 性稟에 따라 각기 마땅한 分數가 정해지고 그에 준하여 不變의 人倫綱常과 身分秩序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조선성리학의 세계에서 主-奴 관계는 君-臣 관계와 同格이었다. 君王의 입장에서 볼 때 主權을 공유하자는 것과 같은 다를 바 없는 이 고약한 양반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스스로 강력해진 君王에 의해 — 실은 老論 一黨獨裁의 성립에 의해 — 위로부터 부정된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평등해진 王의百姓들은 어떠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가. 天命은 어찌하여 때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가. 조선의 군왕과 支配政派가 이렇게 제기되는 哲學的 苦悶에 맞선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정치적이었고 所期의 정치적 성과에 만족하였을 뿐이다. 그러한 고민을 끝까지 추구한 얼마되지 않은 知識인의 한 사람으로 茶山 丁若鏞을 들 수 있다. 그가 발견한 천명은 더 이상 보편적 조화의 理法神이 아니었다. 그의 천명, 곧 上帝는 세상의 죄악과 불평등에 대한 노여움과 세상의 토지와 財富를 자기 것으로 간주하는 욕심으로 가득찬 구체적 감정의 人格神이었다. 또한 그 上帝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가능성의 性稟을 부여받은 본래적으로 평등한 존재였다. 이처럼 茶山은 근대 서유럽의 기독교가 새롭게 발견한 神과 啓蒙主義에 현저히 접근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끝내 기존의 社會倫理를 대체할 새로운 실천적 道德律을 발견하는 데 실패하였다. 인간사회는 여전히 君子와 小人으로 분수가 나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래적 성품이 평등하다고 하나, 上帝의 뜻을 분간하고 실천하는 努力과 修養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듯 다산은 後天的이고 經驗的인 근거에서 인간 차별을 긍정하였다. 末年的 茶山은 오히려 위기에 처한 노비제를 옹호하였다. 그는 從母從良法을 확정한 英祖의 개혁을 칭송했던 이전의 글을 취소하고, 오히려 영조 때문에 나라의 紀綱이 무너져 망하게 되었다고 개탄하였다.⁽¹⁶⁾

이 외로운 天才의 사상적 영향이 그리 커던 것은 아니다. 中央政界에서 소외된 농촌양반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적인 朝鮮性理學을 고집하고 있었다. 南人系로 호남 양반을 대표한 海南의 尹氏家는 금세기초 1902년에 家傳의 奴婢로서 마지막 남은 불과 7명의 奴들과 '義契'라는 이름의 계를 조직하였다. 奴들은 각자 벼 2두씩, 주인은 2석을 내어 基金을 삼고 利殖으로 불려나가 冠婚喪祭 등의 어려운 일에 相扶相助하자는 취지였다. 그 發起文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義契라는 이름은 정말 옳다. 아래 위가 화목하고 순종하며 義로써 서로 돋고 서로 어긋나거나 넘는 일이 없으니 分數가 스스로 밟아지고 萬事が 그 마땅함을 얻는다. 家門이 이로써 바루어지니 어찌 옳고 아름답지 아니한가.”⁽¹⁷⁾ 이 20세기 벽두의 上下分數論에 규정된 노비관은 동 가문에서 전하는 16세기 아래의 많은 古文書 속에서 거의 불변이다. 식민지기 1920년대 후반에 전라도 求禮의 柳氏 양반가는 새해元旦에 몇 안되는 노비들이 歲拜를 오자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등세계가 되었다 하는데, 어찌해서 노비들은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인가 괴이하다. 또한 한 번 웃을 뿐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1, p. 621, 647))고 그 날 日記에 적었다. 그는 世態와 무관하게 너무나 본분에 충실한 노비들에 대해 冷笑的이었다. 그런 그가 몇 대에 걸쳐 섬겨온 어느 奴가 죽자, 자기 조상과 그의 조상과의 인연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양반과 상놈 사이에도 이러한 계속되는 情理가 있으니 어찌 保護해 주지 않으리오. 하물며 백년여동안이나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은 世傳의 奴僕들이 다만 이들뿐임에서 래”고 하면서 따뜻한弔意를 표하였다. 더 이상 조선성리학의 명분론을 빌리고 있지 않지만, 섬김과 보호의 上下情理를 관습적으로 정당화된 道德體系에서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마지막 世代의 兩班을 확인해 보는 대목이다.

요컨대 朝鮮의 奴婢들을 해방시킨 힘은, 노비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감소하는 생산

(16) 茶山의 동요하는 奴婢觀에 대해선 趙誠乙(1986)과 金泳鎬(1989)를 참조할 수 있다.

(17) 同家門의 未刊行 고문서에서.

체제로서 小農社會가 성숙하는 경제사적 과정이 전제된 위에, 새로운 소농을 一君萬民의 체제로 統轄코자 노력한 君主와 정치엘리트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근본적으로 새로운 人間類型과 정신세계가 추구된 도덕적 종교적 혁신의 결과는 아니다. 인간평등을 선언함으로써 天命論이 재해석되었지만,君子와 小人的 분수를 구분한 人性論에서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러한 한, 노비제에 대한 도덕적 羞恥는 끝까지 성립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러한 類의 情緒는 絶對善의 人格神 앞에서, 나아가 오만하게 까지도 그와 더불어, 완벽히 순수한 靈魂의 주체로 되고자 했던 서유럽 基督教徒들의 정신적 緊張에서나 고유한 것이리라.

노비제에 대한 수치심의 결여에 대한 팔레 교수의 지적은 현상 그 자체로는 매우 정확하며 또한 자극적이다. 그렇지만 그 지적이 한국인의 道德能力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초점이 빗나갔다. 문제의 소재는 한국인이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道德類型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인간예속은 상호적 보완의 보호와 섬김이며 그러한 上下倫理로서 身分이다. 저 쪽의 이른바 奴隸로 연상되는 무한한 절대적 종속의 인간관계는, 그 바탕이 된 善과 惡의 절대적 대립으로 짜여진 종교적 정신세계와 더불어, 옛날은 물론 오늘날에도 여기서는 여전히 생소한 것이다.

7. 남 은 말

法的 形式에서 인간이 타인의 財物로 규정되는 예속 및 상호의존의 관계는, 데이비스가 지적하듯이 [Davis(1966, p. 32)], 人類史에서 3천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연속하는 현상이다. 私有財產의 원리를 발견한 최초의 문명권에서 그러한 관계의 인간을 보통 奴隸라고 불렀기에, 오늘날에도 연구자들은 인간이 매매되는 현상을 가리켜 奴隸制라고 부름에 익숙해 있다. 그렇지만 공통의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人間關係나 經濟形態에서 상당한 괴리가 확인되는 경우는 역사학에서 거의 日常에 가깝다.

奴隸가 사고팔리는 인간임에 분명하지만, 사고팔린다해서 반드시 노예는 아니다. 흑인 노예제가 성립하기 이전의 베지니아에서는 백인머슴이 '가장 값진 형태의 재산'으로서 매매되었다 [Morgan(1975): 黃海성 외 역(1997, p. 218)]. 로마法을 재발견한 중세 서유럽의 法學者들은 당시의 農奴를 로마의 노예와 다를 바 없이 매매될 수 있는 領主의 재산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不動產이었지만,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18세기 러시아의 농노들은 법적으로 動產이었다. 이미 패터슨이 재치있게 비유한 대로 [Patterson(1982, pp. 24-

26) 마이클 조던도 시카고 블스의 재산임에는 마찬가지이다. 그가 노예가 아닌 것은 그의 법적 人格과 名譽에 의해서이다. 나아가, 치명적이게도, 사고팔릴 수 없는 노예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私有財產權이 성립하기 이전의 공동체나 국가에 속한 노예들이 그러하였다. 가령 우리나라 高麗王朝의 노비들은, 여러모로 노예임이 분명하지만, 국가에 의해 매매가 금지되었다. 奴隸에 관한 여러 훌륭한 定義가 수렴하고 있는 그 본질은 公民權 내지 共同體의 결여 바로 그것이다.⁽¹⁸⁾ 그런 의미에서 노예상태를 가리켜 패터슨이 “社會的 죽음” (social death)이라 한 것은 단순한 修辭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핀리 (Moses I. Finley) 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奴隸制社會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항구적 노동력 상비가 필요할 만큼 대규모 단위로 집중된 토지의 사적 소유, 상품생산과 시장의 발달, 대안적 내부노동공급 가능성의 부재란 세 가지를 抽出하고 있다 [Finley(1980, p. 86)]. 경험적으로 보면, 이러한 조건들은 신속하고 저렴하며 대규모로 交易과 輸送이 전개될 수 있는 바다를 통해 서로 매우 상이한 水準이나 類型의 두 文明圈이 접촉할 때 가장 쉽사리 충돌되었다. 역시 대규모 노예제사회는 지중해·인도양·대서양을 둘러싼 文明과 未開의 충돌에서 전자의 후자에 대한 잔인한 약탈의 방식으로 성립하였던 것이다. 특수한 國際環境으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自足의인 農業社會로서 朝鮮王朝가 위와 같은 경험적 배경의 노예제사회의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처음부터 의심스런 일이었다.⁽¹⁹⁾

조선의 노비와 미국남부의 褐人노예와의 比較史에서, 우리는 두 隸屬人인 진정 노예로서 공유하고 있는 특질과 더불어, 혼동될 수 없는 큰 차이를 동시에 확인하였다. 두 예속인의 인구비중이 대체로 1/3 정도였다는 점, 모두 법적으로 주인의 재산이며 매매·상속의 대상이었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褐人노예와 일부분의 노비가 주인에 의해 使役되고 紿養되는 처지에 있었다는 점 등이 공통의 특질이다. 반면 노비의 소유규모가 미국에 비해 일반적으로 영세하나 조선측에선 그 上限을 이야기하기 곤란한 王族·官僚들의 대규모 소유가 존재했다는 점, 그래서 分布圖를 그리면 미국남부가 로그正規分布에 가까운 반면 조선은 分散의 범위가 일층 넓고 高峰이 원쪽으로 현저히 偏奇한 위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財產權·法能力·公民權을 보유한 독립적 小經營이 많아진다는 점 등이 혼동해서는 곤란

(18) 이에 관한 최근의 국내 문헌으로서 金炅賢(근간)을 참조.

(19) 실제로 핀리는 “眞正한” 奴隸制社會(genuine slave society)로서 고전 그리스와 로마, 미국남부, 카리브 제도 등을 꼽고 있을 뿐이며 이집트, 균동, 인도, 중국 등에 대해서는 奴隸所有社會(slave-owning society)로 규정하고 있다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14, p. 308, s.v. “Slavery”].

한 큰 차이점이다. 문화적 제측면에서는 外部의 異域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起源과 아무래도 지울 수 없는 검은 피부색에 깃든 종교적 세속적 偏見이 아우러져 흑인노예가 끝까지 자유인으로부터 추방된 상태에 있었다면, 조선의 경우 노비의 기원에 대한 集團記憶은 불투명하기 짹이 없는 가운데 노비가 兩班을 제외한 자유인 일반과 경계를 굳기 곤란한 融合 상태에 있었다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예속인이 解放되는 과정의 특질도 규정하였다. 미국에서는 흑인노예도 자유인과 동일한 靈魂의 소유자란 도덕적 종교적 혁신이 중요하였던 반면, 조선에서는 王權을 제약했던 兩班社會가 쇠약해지는 정치적 力學構圖의 변화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人性論 수준에서의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상의 여러 공통점과 차이점의 종합으로서, 일반적으로 말하여 朝鮮의 奴婢를 奴隸라 稱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比較史가 어렵사리 도달한 결론이다.

이러한 우리의 결론이 넓게 수용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조선의 노비제가 그렇게 다양한 範疇로 이루어졌다면, 왜 그들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던가라는 의문이다. 왜 그들은 모두 ‘奴婢’였을까. ‘노비’에 깃든 노예다움은 지금까지 한국인이 ‘노비’를 英譯함에 있어서 國音 nobi를 사양하고 英語 slave를 택하게 한, 그래서 우리의 미국인 토론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張本人이다. 또한 이 점은 이웃한 中國·日本の 중세 이후의 역사에서 우리의 노비와 다를 바 없는 예속인들이 각기 고유한 국음으로 불렸던 것과도 대조적인 차이다. 이러한 일차적 관찰은 韓國史의 奴婢制에 관한 차후의 연구가 그에 대한 中國史로부터의, 특히 法制의인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해 고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사·일본사에서의 노비적 존재들과 우리의 노비를 비교 검토하는 과제가 자연스레 제기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과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美國南部를 먼저 택한 것은 순서가 뒤바뀌어 혹 無計劃의 소치로 보일지 모르나, 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멀리서 보아야 전체적 윤곽이 쉽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成均館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APT 501-1201

전화: (02)504-7527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전화: (02)880-6375

팩시: (02)888-4454

参考文獻

『古文書集成』3(正書本)(198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權泰煥·慎鏞廈(1977):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試論,”『東亞文化』, 14.

『均役廳病國論』, 國立中央圖書館 일산古 605-3.

金建泰(1993): “16세기 양반가의 ‘작개제’,”『역사와 현실』, 9.

金冕賢(近刊): “西洋 古代世界의 奴隸制,”『奴婢·奴隸·農奴 — 比較史的 檢討 —』, 一
潮閣.

金錫亨(1957): 『朝鮮封建時代農民의 階級構成』, 과학원출판사, 国내복간본(1993), 신서
원.

金泳鎬(1989): “茶山의 身分制改革論,”『韓國史學』, 10.

金容晚(1997): 『朝鮮時代 私奴婢 研究』, 集文堂.

金容燮(1970):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一潮閣.

김종섭(1994): 『형평 운동 연구 — 일제 침략기 백정의 사회사 —』, 민영사.

김형인(1996): “미국의 노예제도: 수정주의의 성과,”『미국사연구』 제4집.

宋洙煥(1990): “朝鮮前期의 王室奴婢,”『民族文化』, 13.

安承俊(1989): “16-18世紀 海南尹氏家門의 土地 奴婢所有 實態와 經營,”『淸溪史學』, 6.

_____ (1992): “1554年 在京士族의 農業經營文書 — 安氏治家法制 —,”『季刊書誌學報』,
8.

_____ (1993): “1745·6年의 筆岩書院 奴婢譜,”『古文書研究』, 4.

梁東杰(1987): “美國 南部經濟의 發展(其一: 1840-1860),”『歷史學報』, 116.

_____ (1994): 『미국경제사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吳希文(1962a): 『尾錄錄』上, 國사편찬위원회

_____ (1962b): 『尾錄錄』下, 國사편찬위원회.

李樹健(1979):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_____ 編(1981): 『慶北地方古文書集成』, 嶺南大學校出版部.

李榮薰(1987):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前期 奴婢의 經濟的 性格,”『韓國史學』, 9.

- _____ (1988) : 『朝鮮後期社會經濟史』, 한길사.
- _____ (1997) : “韓國史에 있어서 近代로의 移行과 特質,” 『經濟史學』, 21.
- _____ (近刊) : “韓國史에 있어서 奴婢制의 推移와 性格,” 『奴婢·奴隸·農奴 — 比較史的檢討 一』, 一潮閣.
- 李柱郢(1987) : 『美國史』, 大韓教科書株式會社.
- 李俊九(1993) :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研究』, 一潮閣.
- 張弼基(1993) : “朝鮮後期 在地士族의 奴婢相續 및 所有實態 — 恩津居 扶餘徐氏家의 戶口單子·準戶口 등을 중심으로 —,” 『國史館論叢』, 43.
- 全鎣大·朴敬伸 譯註(1991) : 『병자일기』, 예전사.
- 全炯澤(1989) : 『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 一潮閣.
- 鄭奭鐘(1983) :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一潮閣.
- 정진상(1995) : “해방직후 사회신분제 유체의 해체: 경남 진양군 두 마을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13. 1, 경남대학교.
- 趙誠乙(1986) : “丁若鏞의 身分制改革論,” 『東方學志』, 51.
- 『增補文獻備考』中(影印本).
- 池承鐘(1995) : 『朝鮮前期奴婢身分研究』, 一潮閣.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1) : 『求禮 柳氏家의 생활일기』下,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韓榮國(1977-1978) : “朝鮮中葉의 奴婢結婚樣態 — 1609년의 蔚山府戶籍에 나타난 事例를 中心으로 —,” 上·下, 『歷史學報』, 75-76.
- 四方博(1938) :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 『朝鮮經濟研究』, 3.
- 朝鮮總督府企劃部(1941) : 『朝鮮農業人口ニ關スル資料』.
- 周藤吉之(1939) :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研究,” 『歷史學研究』, 9. 1-4.
- 平木實(1982) : 『朝鮮後期奴婢制研究』, 知識產業社.
- 浜中昇(1997) : “高麗末期·朝鮮初期の禾尺·才人,” 『朝鮮文化研究』, 4.
- Blassingame, John W.(1972): *The Slave Community: Plantation Life in the Antebellum So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orstin, Daniel J.(1989): *Hidden History*, Harper & Row; 이보형 외 역(1991), 『미국사의 숨은 이야기』, 범양사 출판부.
- Curtin, Phillip D.(1969): *The Atlantic Slave Trade: A Censu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Davis, David Brion(1966): *The Problem of Slavery in Western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1984): *Slavery and Human Prog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lkins, Stanley M.(1968): *Slavery: A Problem in American Institutional and Intellectual Life*,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ngerman, Stanley L., and Eugene D. Genovese(eds.)(1975): *Race and Slavery in the Western Hemisphere: Quantitative Stud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nley, M.I.(1968): *Slavery in Classical Antiqu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80): *Ancient Slavery and Modern Ideology*, New York, Viking Press.
- Fogel, Robert W.(1989): *Without Consent or Contract, Vol. 1,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Slavery*, New York, Norton.
- Fogel, R.W., and S.L. Engerman(1977): "Explain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Slave Agriculture in the Antebellum South,"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 _____(1980): "Explain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Slave Agriculture in the Antebellum South: Reply,"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 Franklin, John Hope(1967): *From Slavery to Freedom: A History of Negro Americans*, 3rd ed., New York, Alfred A. Knopf.
- Genovese, Eugene D.(1965): *The Political Economy of Slavery: Studies in the Economy and Society of the Slave South*, New York, Pantheon.
- _____(1969): *The World the Slaveholders Made*,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1974): *Roll, Jordan, Roll: The World the Slaves Made*, New York, Pantheon Books.
- Gutman, Herbert G.(1975): *Slavery and the Numbers Game: A Critique of Time on the Cros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_____(1976): *The Black Family in Slavery and Freedom, 1750-1925*, New York, Pantheon.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14
- Morgan, Edmund S.(1975): *American Slavery, American Freedom: The Ordeal of Colonial Virginia*, New York, Norton; 황혜성 외 역(1997), 『미국의 노예제도, 미국의 자유』, 比峰出版社.
- Patterson, Orlando(1982): *Slavery and Social Death, A Comparativ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Palais, James B.(1996):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_____ (1997): *Slave Society*, manuscript.

Quarles, Benjamin(ed.)(1960): *Narrative of the Life of Frederick Douglass: An American Slave Written by Himself*, Harvard University Press.

Shin, Susan(1974): “The Social Structure of K mhwa County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Occasional Papers on Korea*, 1.

Stampp, Kenneth M.(1956): *The Peculiar Institution: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 New York, Alfred A. Knopf.